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벌린 미성년자 성매매와의 전쟁의 결과로 사창가 등의 율락업소나 단란주점, 룸살롱, 티켓다방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미성년자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전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율락업소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수는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신종 매매춘'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동안 서울에서만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로 적발된 청소년은 모두 222명, 16세 이하가 전체의 62.6%이었고, 47.3%가 재학생이었다. (조선일보, 2000년 2월 23일자)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청소년의 수는 실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여자 청소년 수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일보, 2000년 7월 18일)

그러면 왜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에 10대 여자 청소년의 참여는 줄어드는 반면 청소년 성매매의 참여는 증가하는 것일까? 우선 고무풍선 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가출한 10대 여자 청소년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일이다. 성매매 산업에 참여할 밖에 없는 잠재 인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가출 청소년 증가로 인해 잠재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매매 산업중 한 부분-율락업소나 유흥업소-을 강력하게 누를(단속할) 경우 성매매 산업의 다른 부

분-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증가는 단지 이런 고무풍선 효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즉 청소년 성매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성매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잠재 인구 외에 다른 많은 청소년을 청소년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여러 면에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최첨단 통신 기기가 총 동원된다는 점이 그렇다. 원래 청소년 성매매의 시작은 전화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화방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PC방으로 옮겨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지고 화상채팅 등이 도입되면서 PC방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주간한국, 2000년 5월 29일자) 실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고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만날 장소를 정하는 전과정은 마치 007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처럼 최첨단 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최첨단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의 속성과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무엇보다 오래 전부터 자유분방하고 어떠한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어왔던 10대에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돈을 제공해준다. 청소년들은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과 달리 최첨단 기기를 사용할 줄만 알면 중간 착취자 없이 성매매 행위의 대가로 다른 형태의 성매매에 비해 높은 “교제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과 달리 핸드폰을 갖고 있고, PC방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항상 돈이 필요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성매매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유혹은 청소년이 있는 어느 곳이나 존

재한다. 전주내일여성센터가 전주시내 중·고생 6백 3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9%인 2백46명이 성행위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의 대부분이 돈을 주겠다는 청소년 성매매였다. (중앙일보, 2000년 12월 6일)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서산 시내 중·고등학생 4백 명중 15%가 PC통신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의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다. (중앙일보, 2000년 11월 9일자) 결과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잡혀온 10대 여자 청소년의 진술에 따르면, 한 반의 20명 정도가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거나 (한겨레신문, 2000년 2월 12일), 혹은 전학년 500명중에 450명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2000년 12월 22일)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도저히 성매매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만한 많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보면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너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10대 여자 청소년처럼 가출 후 자취방 월세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 않게 다른 이유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스타들의 팬클럽 활동과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국민일보, 2000년 7월 18일자, 경향신문, 2001년 3월 12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모자라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경우(한국일보, 2001년 2월 12일, 주부생활, 2001년 3월호), 혹은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하는 경우(2001년 3월 27일), 같은 반 친구의 협박을 받고 하는 경우(연합뉴스, 2000년 3월 24일),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 옆자리 친구가 가진 베르사체 청바지가 부러워서, 친구 생일선물로 20 만원 짜리 옷을 사주기 위해 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과 달리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부모에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다. (한겨레, 2000년 2월 11일) 또한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중산층 가정 출신의 여자 청소년도 많다. “적발한 청소년 성매매 대상 소녀 중 중산층의 평범한 가정에서 중·고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의 45%나 된다.” (동아일보, 2000년 9월 23일) 혹은 “30명이 넘는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일보, 2001년 2월 23일) 특히 최근에는 학교성적이 전교 1-2등인 모범생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여 충격을 더하기도 하였다. (국민일보, 2001년 3월 8일) 더욱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성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사기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자들을 유혹해 성 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거나 절도행각을 벌인” 경우, (중앙일보, 2000년 12월 13일) 자신과 청소년 성매매 한 남성들에게 임신한 것처럼 속이고 성 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 여자 청소년은 청소년 성매매 대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제 각기 다른 환경 요인을 갖고, 다른 이유로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 가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와 좀 더 즐기기 위해 하는 경우, 단순히 성행위만 하는 경우와 협박, 사기를 동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즉 청소년 성매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두루 고려하여야 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이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 법 예를 들면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잡

혀은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에 산업에 참여한 10대 여자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따위의 단계적 선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겨레, 2000년 3월 16일) 즉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 충동적 이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귀가처분’을 개선이 필요한 청소년은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병원위탁 처분’을,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 얼마동안 이들 10대 여자 청소년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안은 귀가 조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소녀는 대부분 보호자에게 인계조치되었다. (조선일보, 2000년 12월 22일) 물론 귀가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방안으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다.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 10대 여자 청소년을 위해 이들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거의 일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검찰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청소년 불처벌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10대 여자 청소년을 다시 구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법 시행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000년 11월 16일 청소년 성매매 소녀가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되었고(조선일보, 2000년 11월 17일) 2001년 1월 19일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고교 중퇴생 K(16)양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10대 여자 청소년이 직업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 선별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처음부터 청소년 성매매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했던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참여 원인에 대한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더라면 또한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이었다면 이처럼 다시 여자 청소년을 구속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청소년성매매의 피해자인 청소년은 다시 가해자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러 학자, 관계자들은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지금은 최소한 성매매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보는 입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성인들이 성매매 청소년에게 필요한 선도·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성매매 청소년이 다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선도·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청소년에게 물었던 시각에서 어떻게 성인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시각이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 변화에 기여했던 몇 가지 노력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노력들은 문제의 초점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옮겨 놓음으로 인해 청소년성매매에서 청소년은 단지 피해자

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자인 청소년을 위해 성인은, 사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성인들은, 사회는 신상공개 논란에 깊게 빠져있고, 몇몇 상습성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쟁에 빠져있다. 한국에서 청소년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성인은, 사회는 피해 청소년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이유로 둘째,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성매매 산업에 참여한 10대 여자 청소년과 달리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대상자가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해볼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의 유형화는 성매매 청소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이들에게 필요한 선도·보호 조치를 내리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현재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선도·보호조치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매매 청소년 유형에 맞는 선도,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좀 더 적절한 선도,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볼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의 기대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에 기여했던 몇 가지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원조교제 용어 사용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오해를 없애고,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용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청소년에서 찾기보다는 성인에게서, 개인적인 이유에서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이론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셋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성인의 책임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데 기여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본론 첫째 부분을 위해서 활용할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이다. 원조교제와 관련한 용어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문자료, 검찰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낸 자료, 그리고 관련 세미나 자료를 모아서 분석, 그리고 해석하려고 한다. 청소년성매매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살피고 역시 분석, 종합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법 해석을 한 자료,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에 관해서는 신문자료를 참조하여 분석, 재해석하려고 한다.

본론의 둘째 부분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그것을 토대로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해보려고 한다. 일단 첫째,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의 실상은 어떤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 성매매 청소년을 좀 더 비교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일본 원조교제 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과연 청소년성매매로부터, 원조교제로부터 청소년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특징을 토대로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할 것이다. 모든 특징이 유형화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특성 10개만을 골라 그것을 토대로 유형화할 것이다.

본론의 둘째 부분을 위해서 사용할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시청각자료분석법이다. 성매매 청소년과 관련하여 학문적인 연구논문은 많지 않지만 엄청난 분량의 인터넷 자료, 신문자료, 잡지 자료가 있다.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을 알기 위해 이런 자료를 수집,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는 학문적 접근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인터뷰한 TV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일본 원조경제 청소년에 관해서는 인터넷 자료와 일본문화연구와 관련하여 나온 자료를 수집, 분석, 그리고 재정리하려고 한다.

본론의 셋째 부분에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은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선도·보호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현재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해 대표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선도·보호 조치인, 귀가조치, 보호처분, 선도보호시설, 쉼터 위탁의 현황은 어떤가, 현재의 선도·보호 처분, 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처분,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 유형에 적합한 선도·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형에 맞는 선도·보호를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론의 셋째 부분을 위해 활용할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과 전문가 면접법이다. 현재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 조치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함과 아울러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 조치와 관련된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대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대상을 위한 정책이나 대안, 서비스 등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정책 담당자나
선도·보호 시설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실현되고는 있지 않지만
가능한 다양한 선도·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3.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 두 번째,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와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알게 된다. 세 번째, 다른 성매매 산업과 비교하여 청소년 성매매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 네 번째,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유를 알게 된다. 다섯 번째,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쉽게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섯 번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보호 관련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한 그것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 일곱 번째,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선도·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

II.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시각 변화

1990년대 후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많은 관심이 청소년에게 쏠렸었다.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일종의 청소년(성)비행, 청소년일탈로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은 청소년들의 지나친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개방의식, 도덕적 불감증 등에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초기 청소년성매매 논의에서 성인 남성의 존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모든 잘못은 청소년에게 있고 청소년의 지나친 배금주의, 성개방의식, 도덕적 불감증은 우선적으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곧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이런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청소년들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인들에 비해 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라 성인의 책임이다. 즉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배금주의적 가치관, 상업주의적 가치관, 왜곡된 성문화, 도덕성 상실의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자라면서 성인들과 같은 가치관, 문화를 습득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청소년의 성비행, 일탈로 보이지만, 그리고 청소년의 물질주의, 성개방의식, 도덕적 불감증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은 바로 성인에게 있고 그들의 상업주의, 왜곡된 성문화, 도덕적 해이가 우선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의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 원조교제라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청소년에서 찾기보다는 성인에게 찾

으려고 했고, 개인적인데서 보다는 사회적인데서, 구조적인데서 찾으려고 했다. 나아가서 청소년성매매를 다루는 기존의 법 역시 문제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 용어의 변화: 원조교제에서 청소년 성매매로. 다음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과 성 관계를 맺고 성인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 행위를 묘사하는 용어로 처음에는 원조교제가 사용되었다.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것은 1995년경 일본에서부터였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중년 남성이 여자고등학생과 ‘데이트’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즉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중년 남성이 삶의 무료함, 허무함,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탈출구로서 여자고등학생을 만나 ‘데이트’(식사, 가라오케, 섹스)하고 그 대가로 ‘원조’(돈) 하는데서부터 나온 용어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일본의 경우, ‘원조’를 강조함으로써 이들 관계의 실체를 숨기고 더 나아가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원조교제가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다. 이용교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서 원조교제가 문제되어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고, 1999년 들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용교, 2000, p. 43) 일본에서 원조교제가 기승을 부리자 한국의 많은 사람은 한국과는 다른 성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고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원조교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일본 원조교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조차 배제된 채 한국의 원조교제는 익명성, 일회성에 근거하여 성인 남성들이 그들의 성

적 욕구를 최대한 채우려는 신종 매매춘 행위로 자리잡아갔다. 특히 최첨단 기기를 이용하는 원조교제는 빠른 속도로 다른 유형의 매매춘-예를 들면 사창가 등의 윤락업소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춘-을 압도해가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는 용어상, 매매춘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자칫 많은 사람들을 오도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 원조교제는 매매춘이고, 특히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조’(도움을 제공함) 그리고 ‘교제’(서로 원해서 사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보게 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어감을 강조함으로써 ‘범죄’라는 의식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면죄부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김진운 경, 한겨레, 2000년 2월 22일자) 이런 상황에서 원조교제라는 용어 사용은 정확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조교제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시작하였다.

올해 초(2001년 4월) 서울 지방 경찰청은 원조교제는 ‘원조’나 ‘교제’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주도적으로 원조교제 대체 용어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이때에 맞춰 서울지검 소년부 민영선 검사는 2001년 4월 27일 심포지엄, “청소년 성보호, 이대로 좋은가”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상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성매매’로 보고 있다는 점에 비취 ‘원조교제’는 ‘청소년 성매매’로 지칭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지검 소년부 부장검사인 신만성 역시 ‘원조교제’를 사용하면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사귀는 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모결과 청소년 성매매, 변태매매춘, 청소년성파괴, 패륜매춘, 미성년강간 등 다수가 공모되었으나 경찰이나 검찰은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역시 10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

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김 성이 위원장은 검찰, 경찰청에서 원조교제 대신 사용하기로 한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의미로 윤락이나 매매춘의 개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신 청소년 성매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 2001년 5월 22일자) 첫째,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의 상품화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인해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성매매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동등한 계약 관계라는 인상을 주는데 실제 성인과 청소년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지 못한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매매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금기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사회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기 못한 청소년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성매매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처벌해야한다는 쌍벌죄 논의를 지지하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도 성을 팔면 법적인 처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쌍벌죄 논리는 청소년이 타의에 의해 성적인 충격을 경험하거나 결손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 보다 더 강력하게 원조교제는 성인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미성년자인 강간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심영희교수가 있다. 그는 청소년 성매매에서 성인과 청소년과의 관계는 매춘이라기 보다는 강간이라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심영희, 2001, pp. 12-13) 첫째, 청소년 성매매를 매춘으로 보는 입장은 성 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연령은 13세 미만, 다시 말해 13세 이상 아동은 동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대가를 받고 성 관계를 할 때는 매춘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교수는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최소한 성 관계에 대한 동의 연령은 15세 내지 17세가 되어야하고 이 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 관계를 하거나 매춘을 할 경우에는 그 청소년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강간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연령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직分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처럼 매춘으로 보는 입장은 청소년과 상대방 성인과의 관계를 일대일의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순거래로 보고 있다. 즉 청소년도 스스로 판단해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과 상대방 성인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다. 청소년은 아직分別력이 충분히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체결하려고 하는 계약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으로서 합리적 판단에 입각한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는 분명히 매춘이 아니라 강간에 가깝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처럼 매춘으로 보는 입장은 청소년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이를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돈이나 허영 사치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지지 기반이다. 그러나 실제 많은 경우 청소년들의 행위는 피치 못한 선택에서 기인되었다. 즉 이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이러한 상태까지 떠밀려왔다. 특히 가출 후 생활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이 많다는 점은 매춘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원조교제 대신 사용하기로 한 청소년 성매매는 ‘원조교제’보다는 ‘원조교제’ 안에서의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엄연히 성을 매개로 대가가 지불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을 마치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둘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이고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인 남성과 여자 청소년이 성을 사고 팔 때 그 관계는 극도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 속에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나 있지 못하다. 또한 비록 청소년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라서 많은 권리를 유보하기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유독 청소년 성매매와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자발성,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비록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원조교제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수가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성인과 청소년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는 원조교제라는 특수한 성유형 (여기서 특수하다는 의미는 일본에서 시작한 원조교제 즉 최신 첨단 기기를 이용하여 성인과 직접 만나는 형태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즉 단란 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까지 포함함으로써 성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김 강자 서장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유흥업소나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많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성매매와 원조교제와의 구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좀 더 잘 나타내고 있는 용어인 청소년 성매수는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폭력적인 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원조교제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보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소년 성매매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무조건 강간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어린 나이의 청소년의 경우, 예를 들면 14세나 15세는 몰라도 17세, 18세 청소년의 경우 비록 성인과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지만 청소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성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나이는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이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분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관계는 불평등하고 폭력적이기는 하지만 강간이라는 용어 사용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어쨌건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어느 연령까지를 의제강간으로 볼지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단 연령이 결정되면 그 연령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수, 미성년자 강간은 각 각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성인이 청소년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원조교제와는 달리 성인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 관계 혹은 성적 불평등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용어 변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성매매의 초점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옮기려는 또 다른 노력은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새롭게 찾으려는데서 볼 수 있다.

2. 청소년성매매 원인에 대한 새로운 조명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이다. 청소년들은 극도로 물질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비싼 옷, 가방, 구두를 갖기 위해, 휴대폰을 사기 위해 혹은 바꾸기 위해, 아니면 남자 친구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들의 개방된 성문화이다. 즉 이들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개방되면서 성 관계를 쉽게 맺고 나아가서 성 관계를 통해 돈을 버는데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개방된 성문화와 관련하여 심지어는 여자 청소년이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원조교제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교, 2000, p.47)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물론 10대 청소년은 배금주의, 물질주의, 성 개방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자 청소년만 그렇게 많은 수가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느냐 혹은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물론 최근 역원조교제, 성인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원조교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적으로 아직 미미하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단순한 몇몇 요인에서 찾는 것은 문제를 단편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게 하고 결국 해결책 마련에도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 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한 두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은 성인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아래에서는 청소년성매매 원인을 청소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인 남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데서가 아니라 구조적인데서 찾으려고 시도했던 몇몇 학자의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

1) 심영희교수의 일상의 권력이론 혹은 상대적 무권력이론

심영희교수는 일상의 권력이론 혹은 상대적 무권력이론으로 청소년 성매매 현상을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심영희, 2001, pp. 10-11) 여기서 일상의 권력은 공식적 권력 외에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아 잘 인지되지는 않지만 권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푸코가 말한 권력의 개념과 대체로 합치한다. 일상의 권력은 사회의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가보다 사회의 모든 부분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공식적인 정치 경제적 위치나 채널에서보다 비공식적인 일상 생활에서 주로 작용한다. 청소년 성매매 현상은 공식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성인 남성들이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일상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상대적 무권력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공식적 권력은 있으나 일상적 권력은 없는 경우이고, 하나는 반대로 공식적 권력은 없으나 일상적 권력은 있는 경우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성인 남성의 경우 후자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공식적 권력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상적 권력은 따라오기 때문이다. 공식적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공식적 권력을 갖기 못한 성인 남성의 경우 상대적 무권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사회문제로 바뀌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 출세하거나 성공하여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할 남성이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권력의 괴리를 다른 채널을 통해, 즉 일상적 권력을 통해 보상받고자 한다.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의 경우 사회로부터 혹은 다른 여성 (대부분 부인들)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이가 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써 권력 괴리로부터 오는 소외감,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심 영희교수의 일상적 권력이론 혹은 상대적 무권력이론은 지금까지의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틀을 갖고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소년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성인 남성에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새롭다. 심 영희 교수의 권력이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오랫동안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추적해온 전 서초경찰서 소년계장 정상배 경위에 의하면 “원조교제 사범이라고 해서 특정 직업 군에 속하거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조사 결과 오히려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 중 많은 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전하고 그런 일을 도저히 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아마 연예인 송영창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피의자 중 상당수는 현재 권력의 중심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적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 직업 중에는 변호사, 교수, 의사, 지역유지들-용인시의회 의원, 모 지구당 부위원장, 전 파출소장 등이 있는데 이들이 공식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심교수의 시도는 새롭지만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김은실의 호이가드와 핀스타드 집단문화이론의 한국 적용

김 은실교수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노르웨이의 학자,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이론 틀을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다. (김 은실, 2001, pp. 167-169)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십대 여성의 성적 서비스 매매를 연구한 호이가드와 핀스타드는 “누가 매춘 여성이 되는가?”, “어떻게 여성이 매춘 여성이 되는가?”, “매춘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십대 여성이 매춘

여성이 되게 하는 조건은 그들 각 개인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아니라 매춘이 하나의 선택으로 공유되는 집단적인 문화 경험 혹은 집단적인 문화로의 통합이다. 십대 여성들은 이미 형성된 집단 문화 속에서 우선 "여성의 성/몸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자기 변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들은 자신의 이미지로서 어떠한 여성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가 매춘 여성이 되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십대 여성들은 사회 속에 내재해 있는 집단 문화 속의 여러 여성의 이미지 중 여성의 성을/몸을 상품적 가치로 활용하는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일단 이런 전환 과정이 끝나면 쉽게 매춘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김 은실 교수에 따르면, 호이가드와 핀스타드가 주장하듯이 한국의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행위도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문화 경험에서 비롯된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매춘 여성은 단지 돈 때문에 매춘하는 것처럼 보인다. 십대 매춘 여성 중 돈 이외의 이유 때문에 매춘을 하는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동기가 십대 여성을 매춘 여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에 내재해 있는 집단적인 문화 경험이 그들을 매춘 여성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 매춘은 성이 특히 여성의 성이 상품적 가치와 교환적 가치를 지닌 사회 체제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체제 내에서 여성은 여성의 성을 원하는 남성을 통해 사회의 이익/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0대 여성과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돈이 필요한 십대 여성들은 돈을 위해 남성을 상대로 매춘을 하게 된다.

이처럼 김은실교수는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입장을 빌려 한국의 십대 여성들이 왜 매춘에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 했다. 특히 김교수는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최소한 개인적인 데 맞추기보다는 사회적인데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한국의

경우도 노르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십대들 중 매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들 개인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배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배경이 집단적인 경험으로 전환되고 통합되는 특정한 집단 문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은 아마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실임이 입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60, 70년 대 여자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 여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재 10대 여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실제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0대들 사이의 집단적으로 형성된 문화 속에서 배태되어 나온 것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러나 김 은실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이론 틀을 빌려와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떻게 한국의 십대 여성들이 자신의 성/몸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자기 변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국의 십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여성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한국의 십대 매춘 여성은 여러 여성 이미지 중에 하필이면 자신의 몸/성을 상품으로 교환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한국의 십대 매춘 여성이 공유하게 되는 집단적인 문화는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겼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십대 매춘 여성의 개인적인 조건은 어떻게 집단적인 문화에, 그리고 집단적인 문화는 어떻게 개인적인 조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많은 학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의 초점을 여자 청소년에게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3) 신미식의 집단문화이론의 또 다른 적용

신 미식은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집단문화이론을 한국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 이론을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도 확대시켜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한국의 여자 청소년은 어떠한 집단 문화 속에 놓여 있으며, 그 문화 속에 놓인 청소년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기 변환 과정을 달성하게 되고, 왜 많은 여성 이미지 중에 여자의 몸/성을 상품적 가치로 활용하려는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결국 자기 변환과정, 특정 여성의 이미지와 동일시 과정을 거친 여자 청소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집단적 문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성인 남성들도 10대 여자 청소년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이론을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성인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시켜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신미식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이 공유하는 집단 문화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집단문화는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신미식에 따르면, 한국의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화는 무엇보다 크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상업주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미식, 2000a, p. 7) 그리고 이 문화는 같은 특성을 가졌지만, 남성과 여성,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대상상의 특성 때문에 서로에게 상반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녀사이의 성불평등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남성들은 자유로운 성행위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여성의 몸/성도 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여성들은 극도로 성행위를 제약받게 되고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는 여성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성은 두 가지 부류-“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로 나누어진다. (신

미식, 2000b, p. 34) 그리고 “정숙한 여성”은 정숙한 여성대로 “타락한 여성”은 타락한 여성대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을 받게 된다. 정숙한 여성의 경우는 정숙하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반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자유를 포기해야하고 타락한 여성은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타락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한다. 흥미로운 것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정숙한 남성, 타락한 남성이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새 10대 청소년은 과거보다 훨씬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10대들은 성을 자유롭게 취하기도하고 버리기도 한다. 성은 단지 쾌락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개방된 성문화 속의 여자 청소년도 실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녀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첫째, 한국의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성을 가볍게 여기고 성행위를 쉽게 한다. 그러나 그런 성행위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여자 청소년의 몫이다. 여성은 피임에 책임져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낙태를 하든지 혹은 낳든지- 져야한다. 둘째,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직 순결을 강요받고, 순결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락없이 타락한 여성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책임 없이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전보다 많은 성적 자유를 누리기는 하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비싸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 관계를 맺을 때로 여성과 남성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여성들은 가능하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만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개방된 성문화 속에서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성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오랫동안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라오면서 느끼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연결된다.

십대 여성의 대다수는 이미 오래 전에 한국의 학교교육 혹은 입시제도의 낙오자가 되었고 극도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이들은 남성에 종속되는 삶 방식이외에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없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나 다른 성인 여성들은 그들에게 삶의 주체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다. 이런 속에서 이들은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키워질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나 확신을 가지는 한 여성으로서 자랄 수 없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꿈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특히 성적 경험을 한 경우라면 그들의 미래는 더 더욱 불투명하다. 이들은 이미 '타락한' 여성이 되어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정숙한 여성으로서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가정이나 학교가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다. 자연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것을 찾아 거기에 안착함으로써 현재의 우울함, 미래의 불안함을 잊어버리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상업주의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간다.

실제로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바로 자신의 몸/성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높은 상품적 가치를 가진 상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이들 10대 여성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만나는 여성의 이미지들에 의해 강화된다. 매스컴 등에서 이들이 접하는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몸/성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번다. 자연 이들은 이런 여성들을 닮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여성들의 이미지가 단지 매스컴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허구적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이미지에 자신을 일치시켜 똑같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대부분 이들 여자 청소년에게 더 많은 공허감을 안겨다 줄뿐이다. 왜냐하

면 이런 노력은 단지 허상을 쫓으려는 노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이들 여자 청소년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현실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어한다. 이런 와중에 이들은 소비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 즉 자신의 몸/성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갑작스런 과정이 아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자라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매춘을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고, 매춘하는 행위에 대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신미식은 10대 여자 청소년이 이런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매춘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남성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매춘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고 본다. 남성들만이 공유하는 가부장적인, 상업주의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여성 몸/성을 정당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소유할 수 있다는 자기 변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런 전환 과정에서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쩌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가져야할 특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특히 돈과 권력만 허락한다면 상품으로 나와있는 어떠한 여성의 몸/성도 사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성들 역시 별 죄의식 없이 매매춘 행위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10대 여자 청소년의 몸/성도 사게 된다. (실제 10대 여성들의 몸/성을 산 많은 남성들에게 왜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가에 대해 물었을 때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할 필요 없어서 한다, 혹은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가부장적 상업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아울러 집단적인 문화의 묵시적인 동조 속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것같이, 성인 남성도 가부장적인 상업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아울러 다른 남성들의 목시적인 동조 속에서 10대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된다.

신미식은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집단문화이론을 구체적으로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왜 한국의 10대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왜 한국의 성인 남성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가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심영희의 일상적 권력이론 혹은 상대적 무권력이론은 청소년 성매매 원인을 청소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은실의 (혹은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집단문화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데서 찾기보다는 사회적인데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그리고 신미식의 경우 집단문화이론을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성인남성에게도 적용하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이론들은 나름대로 보충되어야 할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으로, 개인적인 데서부터 구조적인 데로 옮겨 놓음으로써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시각 변화에 기여한 또 다른 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시행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무엇보다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 초점을 청소년에 맞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반성 하에서 청

소년성매매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려 했다. 즉 이 법은 그 전의 법과 달리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성인에게 묻고 대신 청소년은 성인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희생물이라는 시각에서 청소년을 최대한 선도·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이 법의 의도는 동 법 제 1조에 잘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에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윤락(매매춘)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제공했던 윤락행위방지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미성년자를 20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 정의를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을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훨씬 확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윤락행위방지법 제26조 제3항은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윤락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제시하고 있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매매춘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병식, 2000) 그러나 청소년성보호

법 제13조에 의하면 “.....죄의 대상인 된 청소년(이하 “대상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호처분에 관해서는 동 법 제15조는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항 각 호의 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성보호법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중 죄질이 나쁠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 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성인의 처벌은 강화하되 청소년의 형사처벌은 면제하는 대신 선도·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한국의 남성 중심적이고 성인 중심적인 사회·문화구조 속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바로 성인 중심적이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 구조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상공개는 많은 성인 특히 성인 남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실제 신상공개문제는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굳이 신상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주장 속에서 신상공개조항 자체의 폐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또한 가능한 한 신상공개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2000년 10월 3일 최종적으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한겨레, 2000년 10월 4일자)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을 신상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자 중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사위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 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 전력(10점) 등을 심사해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만 신상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어쨌건 이런 논란 속에서도 2001년 8월 31일 1차 169명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개 대상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노무자로서 신상공개 되어도 별로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2차 신상공개는 2002년 3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82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44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차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을 인식해서인지 이번 2차 신상공개에는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 상류층 인사들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경재 교수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는 공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소명, 이의제

기 절차 규정이 미비하고 공개절차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경재, 2001b, pp. 19-20) 또한 한국의 남성중심 성문화 구조 속에서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몇 몇 남성만을 골라 신상공개와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몇 몇 남성을 속죄양으로 만들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이며 신상공개에 앞서 성인(남성)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던가 혹은 성매매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던가 하는 좀 더 점진적이면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신 미식, 2000a; 최영애,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실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전체 형사범 기각률 13.7%보다 훨씬 높은 50.8%(2000년 상반기 서울지검 집계)나 되고 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청소년성매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명 중 31명이 기각된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전체 5993건 중 823건만이 기각되었다. 또한 아예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숨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민일보 7월 21일, 22일자)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 142명을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성매매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6%인 5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61.4%(51명)는 집행유예, 32.5%(27명)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은 5명도 그나마 1심 형량은 징역 6월-1년에 그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는 5백만원 51.9%(14명)가 가장 많았고 7백만원 14.8%(4명), 4백만원 11.1%(3명), 1천만원 7.4%(2명) 순으로 벌금형도 매우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다. (경향신문 2001년 4월 30일자) 심지어는 서울지방법원은 가출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2,000~1만4,000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법원이 무죄 판

결을 내린 이유는 “대가성을 폭 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윤리적 비난과 형사처벌은 다른 문제”라는 이유에서 였다. (세계일보, 2001년 8월 23일) 이런 경우는 최전방에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판사들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취지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다.

판사들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해오고 있다. 특히 성인들만 형사처벌하고 청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가져온 검찰은 성매매청소년 중 상습적이고, 수법, 동기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한다는 내부 방침을 만들었다. (중앙일보, 2001년 1월 22일) 그러다 결국 서울지검 소년부는 2001년 5월 10일 ‘원조교제 청소년불처벌 원칙’을 포함해 일부 조항을 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문화일보, 2001년 5월11일) 검찰은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가 그 동안 성인들의 ‘유인’에서 발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1회성 즉석 매춘’을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 죄의식 없이 저지른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여성계,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만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1년 7월 25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는 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이 법의 시행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리고 시행의 결과 역시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상공개 후에 한 달 동안 청소년성매매 건수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 (한겨레, 2001년 10월 15일자) 2001년 8월에는 55건의 청소년성매매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9월에는 78건의 청소년성매매 사건이 보고되었다. 또한 2001년 8월에는 35명의 남성이 청소년성매매로 불

잡혔지만 9월에는 65명의 남성이 청소년성매매로 붙잡혔다.

한국에서 청소년성매매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과 관련된 제반 조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제 이 법의 제정, 시행과정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정, 시행 후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경재, 2001a, p. 91) 늦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을 때 결국 법 따로 집행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얹혀있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합적인 대책이 서야하는데 불구하고 신상공개와 같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단지 법적 대응으로만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다. (이민희, 2001) 즉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청소년성매매와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법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필요한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할 때만이 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에 보았던, 좀 더 적절한 용어 사용을 위한 노력이나 청소년성매매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성매매의 책임을 청소년에게 묻으려고 하지 않고 성인에게 묻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인,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합의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토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초점이 청소년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전처럼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묻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원래의 목적, 즉 청소년성매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

만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선도·보호한다는 목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인 성인을 잡는데, 혹은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닌가 논란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로써 청소년의 보호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선도·보호 대책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째, 성매매청소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의 비교 관점에서 일본 원조교제 청소년의 특성도 알아볼 것이다. 셋째, 청소년성매매가 그리고 원조교제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그들을 유형화시켜보려 한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하려는 목적은 성매매 청소년의 배경이 그리고 특성이 다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위한 선도·보호 대책은 전혀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성매매청소년 선도·보호 대책으로 주로 취해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단순귀가조치라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성매매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묶이지만 이들의 가출여부, 참여 동기, 재학여부, 출신 가정, 참여기간, 참여 형태, 성인에 대한 태도, 범죄가담 여부, 미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유형에 속해있는가는 바로 이들이 어떠한 선도,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유형화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배경이 존중됨으로써 좀 더 개별화된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의 선도, 보호 대책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개별화된 선도, 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소년성매매가 한국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III. 다시 성인에서 청소년으로의 시각변화

1. 한국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특징

성매매 청소년 실태를 위한 자료로는 서울 지방검찰청 소년부가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사건기록을 분석한 「청소년성매매사범 분석통계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가 2000년 7월과 2001년 7월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그리고 청소년문제 정책포럼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김종휘, 2001년; 자녀안심운동 서울 협의회, 2000; 고성혜, 2001; 황순길외, 2001)

1)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

(1)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 성매매로 붙잡힌 청소년 75명 중 13세 8% (6명), 14세 10.7% (8명), 15세 24.0% (18명), 16세 32% (24명), 17세 13.3% (10명), 18세 12%(9명)이다. 특히 만 15세부터 17세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재학여부: 학생 46.7% (35명), 비학생 53.3% (40명)이다. 여기서 비학생이라 함은 대부분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고 현재 특정한 직업을 갖기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가정환경: 양부모를 모두 갖고 있는 가정출신이 41.7% (20명), 부모가 있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있어 한 쪽 부모와 살거나 혹은 가까운 친척하고 함께 사는 가정출신이 54.2%(26명), 부가 사망하여 모와만 사는 가정 출신이 2.1%(1명), 모가 사망하여 부와만 사는 가정 출

신이 2.1% (1명)이다.

(4) 청소년이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 동기: 용돈마련이 50.7% (38명), 가출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25.3% (19명), 호기심으로 14.7% (11명), 우발적으로 8.0% (6명), 기타가 1.3% 이다.

(5)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있다 61.1% (33명), 없다 38.9% (21명)이다.

(6) 청소년의 성경험: 있다 76.7% (33명), 없다 23.3% (10명)이다.

(7) 청소년의 가출경험: 있다 51.3% (20명), 없다 48.7% (19명)이다.

(8) 청소년 성매매 최초 접촉 시부터 성접촉까지 시간간격: 1시간 이내 12%, 1시간-2시간 이내 19%, 2시간-3시간 이내 14%, 3시간-4시간 이내 12%, 4시간-5시간 이내 7%, 5시간-6시간이내 7%, 6시간-10시간 이내 3%, 10시간-15시간 이내 2%, 15시간-24시간 이내 3%, 24시간 이상 21% 이다.

(9) 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되는 매체: 인터넷 66.7%, 전화방 26.0%, 핸드폰 3.3%, 생활정보지 0.8%, 소개 1.6%, 노상 1.6%이다.

(10) 청소년성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숙박업소 73.3%, 피의자의 집 16.3%, 승용차 4.4%, 사무실 1.5%, 비디오방 2.2%, 친구집 2.2%이다.

(11) 청소년성매매 성행위 방법: 1대1 섹스 85.9%, 오랄 섹스 9.2%, 1대 2 섹스 4.9%이다.

(12) 청소년성매매 대가: 5만원미만 19.7%, 5-10만원 9.2%, 10만원 대 40.8%, 20만원 대 9.2%, 30만원 대 1.3%, 50만원 대 0.7%, 70만원 대 0.7%, 80만원 대 0.7%, 돈못받음 4.6%, 숙식제공 8.6%, 의류·액세서리 2.6%, 교통비 1.3%, 유흥비 등 0.7%이다.

(13) 청소년성매매 제외: 성인남성 76.8%, 청소년 14.8%, 미상 8.4%이다.

(14) 청소년성매매시 성접촉횟수: 1번 57.9%, 2번 25.6%, 3번 6.8%, 4번 2.3%, 5-9번 4.5%, 10-14번 1.5%, 15번 이상 1.5%이다.

(15) 청소년부모의 직업 (부의 경우): 자영업 29.3% (22명), 회사원 4.0% (3명), 종업원 1.3% (1명), 공무원 2.7% (2명), 노동 1.3% (1명), 무직 3명 (4.0%), 기타 57.3% (43명)이다.

(16) 청소년부모의 직업 (모의 경우): 주부(무직) 29.0% (21명), 자영업 5.3% (4명), 종업원 4.0% (3명), 회사원 2.7% (2명), 기타 60.0% (45명)이다.

(17) 청소년이 처음 청소년성매매를 시도한 장소: PC 방 60.6%(60명), 전화방 23.2%(23명), 청소년집 9.1% (9명), 공중전화 4.0% (4명), 공공장소 3.0% (3명)이다.

(18) 청소년의 가정형편: 집안경제사정이 어렵다 38% (17명), 보통이다 49% (21명), 넉넉한 편이다 13% (6명)

(19) 청소년 핸드폰 소유 비율: 약 60%이다.

(20) 청소년 핸드폰 사용비: 20만원 이상 33%, 10만원 이상 60%이다.

(2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90%이다.

(22) 청소년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 (중복응답): 쉽게 돈 벌고 내맘대로 쓸 수 있으므로 69.2%, 정보통신 매체의 무차별 보급 322.7%, 개방적인 성문화 21.6%, 청소년성매매를 하더라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므로 16.4%,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므로 15.6%,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방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5.2%

(23) 청소년성매매에 따른 위험부담 (중복응답): 임신·낙태·성병 82.9%, 자기 사랑이 줄어들 49.2%, 일과 노동의 가치를 모른다 43.6%,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 37.5%, 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32.1%

(24) 청소년성매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48.2%, 미래에 대한 희망 14.8%, 가족에 대한 사랑 8.2%, 교육 및 홍보 5.7%, 성에 대한 바른 이해 5.6%, 현재에 만족하는 삶 4.9%, 강력한 법적 규제 2.9%

(25) 청소년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가족·사회적인 예방책:
올바른 성교육실시 49.6%,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44.5%,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 37.9%, 가족 내에 건강한 성과 사랑 훈육 27.6%, 청소년
성매매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25.3%

(26) 청소년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예방책(중복응답):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에 대한 처벌 강화 57.4%,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의
신상공개 45.4%,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 확충 43.6%, 가출청
소년쉼터, 청소년보호시설 확충 41.7%, 건전한 취업 기회 제공 38.5%

2) 성매매 청소년의 특징

(1)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은 무엇보다 저연령층에 속한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13세나 14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나 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의 연령층이 더욱 더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이 연령층에 속하는 성매매 청소년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2) 성매매 청소년 중에 재학생의 비율과 학교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거의 반 반씩이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에 다니건, 그렇지 않건 이들이 학
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이들은 학교는 할
수 없이 가는 곳이고 혹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으로 학교는 그들의 삶
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재학생의 경우라도 청소년성
매매의 참여 기간이 길어지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3) 성매매 청소년이 속한 가정형태도 역시 양부모 가정과 그렇지 않
은 가정과 거의 반 반씩이다. 양부모 가정 출신의 청소년이 반 이상이라
는 점은 소위 말하는 “정상” 가정에서의 청소년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 있
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 많은 부모들이 청소
년을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무관심 상태로 청소년을
방치해 두기도 한다. 양부모 가정이 아닌 한 부모 가정이나 그 밖의 형태

의 가정 출신의 청소년의 경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으로 인해,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청소년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이유는 거의 99%가 돈 때문이다. 물론 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르다. 용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남자 친구 선물 사 주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 가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컷 놀아보기 위해 등등. 즉 청소년도 돈을 매우 중요한 것, 혹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 그들은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래 돈은 벌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5)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성경험을 갖고 있다. 비록 청소년들 사이에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었지만 아직도 그들 대부분(남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역시)은 성에 관련해서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 즉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단 성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들은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이들을 쉽게 청소년성매매로 빠지게 한다.

(6) 성매매 청소년들의 약 50% 정도가 가출 청소년이다. 한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과 청소년성매매의 확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복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혹은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복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 상황의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다.

(7) 성매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고 (약

록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고 자신들은 아르바이트 정도로 청소년성매매를 생각하고 있더라도 주위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현실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남자, 학력, 부, 좋은 가정 배경-은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좀 더 정확하게 이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은 일본 원조교제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일본 원조교제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일본에서도 원조교제(援助交際, enjo-kosai)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극히 최근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스왑매니아」라는 잡지가 여고생과 성인 남성과의 ‘애인’ 관계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다. (김명학, 1999, p. 28) 1980년대 초 이후로 일본의 대표적인 풍속(섹스비즈니스)업소인 데이트클럽은 성인 남성에게 여고생과 “데이트(식사나 가라오케, 더 나아가서 성 관계)”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데이트 클럽을 이용한 성인 남성들은 여고생과 데이트하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원조(돈)를 베풀었다. 이 당시 이런 관계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매스미디어나 잡지

등은 이런 관계를 나쁘게 묘사되기보다 오히려 좋게, 낭만적으로 묘사하였다. 예를 들면 TV 방송국들이나 틈 잡지들은 여고생들이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로서가 아니라 흥미로운 성 풍속도로서 그렸고 이는 곧바로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결국 원조교제는 여고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제 원조교제는 야릇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매춘의 대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65) 현재에는 매춘을 찾는 성인 남성이나 청소년들은 별 거리낌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일본 원조교제의 구성요인

일본의 원조교제는 표면적으로는 고급 상품에 중독 되어있는, 고겔이라고 불리어지는 여고생 (최근 일본도 여자 대상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고등학교 여학생(고겔)으로부터 중학교 여학생(마고겔)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들의 젊음을, 몸을, 성을 사는데만 관심을 보이는 일본 남성, 시청률을 위해서 도덕이나 윤리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감각적인 주제만을 찾아나서는 매스미디어,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고겔이라는 여고생과 그들을 찾는 일본 남성을 맺어주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풍속업소들에 의해 가능하였다.

첫째, 일본 원조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겔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고겔(고등학생+겔(girl)=고겔)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만들어 낸 용어이다. 고겔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3년 6월 주간지 『SAP』에서였다. (김 명학, 1999, p. 18) 이어 TV에서 고겔을 특집으로 다루게 되면서 고겔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부르는 공식 용어가 되어버렸다. 실제 고겔은 매춘 소녀와는 별개로,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고등학

교 여학생을 일컫는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변색되어 차츰 원조교제를 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김 명학은 고겔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부터라고 보았다. (김 명학, 1999, pp. 21-29) 이들 고겔 들은 우선 패션에서나 외모에 있어 눈에 띈다. 이들은 주로 미니 스커트에 하이속스란 무릎 밑까지 오는 긴 양말을 신고 있다. 그리고 피부는 선풍을 하여 까맣게 태우고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을 한다. 이렇게 다분히 상업적인 용어로 시작된 용어인 고겔은 고겔로서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즉 집에서 주는 용돈이나 맥도널드, 혹은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고겔의 패션이나 외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싼 옷이나 신발 등을 사거나 혹은 선풍이나 염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원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중년 남성들은 오래 전부터 이 구조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졌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남성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바쁜 회사 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당했다. 결국 많은 중년 남성들은 외로움을, 쓸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일본 경제 붐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를 가져다주었고, 그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외로움 달래줄 “따뜻한” “새로운” 대상을 찾으려고 했다. 실제 오래 전부터 일본 남성들의 왜곡된 성행각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60년대, 1970년대 일본 남성은 한국에서 기생관광에 몰입했었다. 그리고 그 후 중심 무대를 동남아 아시아로 옮겨 그곳 여성들의 몸/성을 사는데 열심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부터 관심을 일본 여고생으로 돌렸다. 이들이 일본 여고생에게 관심을 돌린 데는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일본 여고생은 젊음의 상징, 성적 매력 만점, 바로 터져 버릴 것 같은 생기, 발랄함의 상징이 되었고 생활에 찌든, 그래 무엇인가 새로운 둘

출구가 필요한 중년 남성에게, 여고생은 무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인 남성들은 여고생이 입었던 팬티를 산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체육시간에 입었던 땀에 절은 체육복(부르마), 아니면 고등학생의 교복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은 여고생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어했고 또한 가능하다면 성 관계를 맺고 싶어했다. 실제 이들 욕구의 상당 부분은 처음부터 매스 미디어 등에 의해 철저히 상업적으로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주요하지 않았다. 이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 고갱들을 만나고, 만지고, 그들과 자고 싶어했다.

셋째, 일본의 상업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신세대 여고생, 고갱과 고갱을 만나고 싶어 애쓰는 성인 남성들의 만남은 고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그런 만남은 일본의 두뇌 집단 모두가 집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끊임없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풍속업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67) 풍속이라는 업소는 기본적으로 섹스비즈니스 업소로서 2대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김명학, 1999, p. 85) 첫째, 돈벌이가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둘째, 붙잡히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한다. 즉 풍속업계는 민감하게 돈벌이가 될 대상으로서, 돈 있는 중년 남성의 최대의 관심사인 고갱이라는 여고생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둘을 연결시켜주려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다. 결국 이런 '노력' 속에서 테레크라, 전언다이얼, 투쏫다이얼, 데이트클럽 등이 만들어졌다.

테라크라는 텔레폰 클럽(일명 전화방)의 일본식 영어발음인 '테레혼크라브'의 줄인 말이다. 테레크라숍에서 남자는 1 시간에 1~3천 엔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전화와 작은 책상, 메모 용지가 비치된 독방으로 들어간다.

남자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가게의 자동전화교환기를 통해 외부로부터 걸려온 여성의 전화를 방으로 연결시킨다.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경로는 통상신문, 잡지광고나 광고전단. 이렇게 해서 서로 모르는 남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서로 만나고 러브호텔로 가는 것은 두 사람의 결정에 맡긴다. (김명학, 1999, p. 86) 테라크라는 1987년경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988년 10월에는 551군데, 1989년 10월에는 828군데, 1994년 8월에는 1천5백 개로 급증하였다. (김명학, 1999, p. 88) 그러나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리고 테라크라가 원조교제의 매개라는 것이 밝혀지고 단속이 심해지면서 테라크라는 사향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전언다이얼은 말 그대로 말을 전해주는 일은 한다. (김 명학, 1999, p. 89) 그러나 전언다이얼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음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전락하였다. 다시 말해 원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에서부터 점차 음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더니 나중에는 섹스 상대를 찾는 사람들의 섹스 상대를 찾아주는 매개체로 바뀌었다.

다이얼Q란 IP(information provider)라고 불리는 정보 제공업자가 1분당 50-70엔 정도의 요금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김명학, 1999, p. 91) 처음에는 일기예보, 증권시세, 영어회화, 점성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다가 차츰 섹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종이 되었다. 다이얼Q의 주요 섹스정보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는 '파티라인'이며 다른 하나는 생면부지의 두 남녀가 대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유료전화 서비스 '투스렛다이얼'이다. 특히 투스렛다이얼은 두 남녀가 비밀성과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라크라 못지 않게 원조교제의 온상이 되었다. 전언다이얼, 다이얼Q, 투스렛서비스 모두 원조교제의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되었지만 곧 이들은 더 새롭고 더 교묘한 매개체로 대체될 따름이다.

데이트클럽은 원래 매춘부를 소개하거나 파견해주는 남녀교제 클럽으로 비합법적인 매춘 중개업을 일컫는 말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김명학, 1999, pp.94-95) 하나는 가게에 대기하던 여자를 남자 손님이 지명해 데리고 나가는 점포형, 다른 하나는 손님이 러브호텔이나 집으로 불러들이는 무점포형이다. 원조교제의 온상이 되어온 여고생 데이트클럽은 점포형 형태로 여고생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에 입회비와 입장료를 내고 들어 온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고생을 골라 데리고 나간다. 데이트 클럽업주는 매춘 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남자 손님에게는 여고생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대가로 입회금과 입장료를 받지만 여고생에게는 일체 돈을 받지 않는다. 여고생은 데이트 내용에 따라 손님에게 직접 원조를 받게 된다. 실제 모든 여고생들이 다 남자 손님하고 러브호텔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데이트에 응하게 된다. 데이트 클럽 역시 원조교제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한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원조교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그것의 온상으로 지적 받은 풍속업소는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 곳이 사그러들면 더 새롭고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풍속업소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거듭되면서 여전히 살아서 원조교제를 부추기고 있다.

넷째, 유교문화가 아직도 강한 한국과 달리 일본의 TV나 잡지는 한국의 TV나 잡지보다 훨씬 성을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상품으로 파는 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고생이나 여중생의 성도 예외일 수 없다. 여고생을 고궤로 상품화한 것도 바로 여고생들이 즐겨보는 잡지와 TV 방송이었다. 고궤이 한참 세간의 관심을 끌자 이들은 여고생을 집중적으로 취재함으로써 그들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상품을 살 수 있는 남성에게 그들이 얼마나 새롭고, 신기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소개해주

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겔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겔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서 고겔로서 높은 상품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여학생은 무엇이 필요한 지, 무엇을 구입해야하는지, 그리고 옷은, 양말은, 머리는, 화장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매스컴에 의해 여고생은 고겔이라는 상품으로 새롭게 탄생되었고, 매스컴은 자신들이 만든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홍보에 열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겔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매스컴은 고겔이 남성 고객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결국은 원조교제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게 되자 처음에는 마치 자신들의 상품 전략이 성공이라도 거둔 것처럼 흥분하여 보도에 열을 올렸다. 1996년 7월 12일, ‘아침부터 생텔레비’에서는 ‘격론! 여고생과 일본’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내보내고, 1997년 3월 28일, ‘아침부터 생텔레비’는 ‘격론! 원조교제의 일본’을 방송하였다. (김명학, 1999, p.80) 그후 다른 방송도 다투어 고겔과 원조교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문제는 고겔이나 원조교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센세이셔널하게만 다루었다는 점이다. 한 TV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는 원조교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는데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여고생 역을 맡은 연기자(실제 그 역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음)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두근두근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오늘 신주쿠에서 파파를 만나거든’ 같은 얘기가 돌고 있죠. 이번에 그 역을 맡아보니까 그 스타일을 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김명학, 1999, p. 81) 이제 일본의 매스컴은 고겔에 흥미를 잃고 마고겔(중학교 여학생)으로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본 원조교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신종 ‘아르바이트’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시작된 배경이 다르고 사회구조 자체가 달라서인지 일본 원조교제 청소년과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일본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을 대략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특징

첫째,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의 비해 일본 원조교제 여자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 학생이다. 한국과 달리 명문고등학교가 아직 존재하는 일본에서 실제 원조교제를 하는 많은 대상자 중에 명문고 출신도 상당히 많다. 이들이 학생이라는 사실은, 그것도 명문고 출신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일본 중년 남성이 단지 이들 학생이 입었던 교복, 체육복, 속옷 등에 큰 관심을 갖고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데이트 클럽 업주들이 가능하면 여자 대상자들에게 교복 입기를 적극 장려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상품적 가치는 바로 이들이 학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그만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학교는 재미없는, 최악의 장소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p. 48-49) 이들은 학교라는 곳은 더 이상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비친 학교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다. 수업도 들을 가치가 없고 선생님 역시 전혀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출석 하나만은 확실하죠. 몸이 아프거나 할 때만 쉴 뿐예요.” “제 경우엔 학교에 잠자러 가요.” 다시 말해 이들은 학생으로서의 높은 상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만은 학교는 더 이상 이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둘째, 일본 원조교제 여자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양부모가 모두 있고 아버지는 최소한 대기업 샐러리맨 정도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많은데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들 부모 중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상당수가 딸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자 대상자의 경우 부모가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부모와 자신은 별개고 자신들의 사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들은 부모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친 부모는 너무나 힘들게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난 부모님께 노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드리고 싶어. 집안 사람한테 발각만 되지 않는다면 바람을 피우셔도 좋고 정말 나 몰래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셨으면 좋겠다니깐.”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53)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원조교제 하는 여자 청소년 중 부모 때문에 원조교제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 원조교제 여자 대상자는 한국과 달리 가출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대부분이 모자라는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옷이나 가방, 신발을 사기 위해,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들은 돈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의 돈이란 너무나 가난하여 밥을 굶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지는 않지만, 혹은 꽤 많은 경우도 가끔 있지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용돈은 고가의 품위를 지키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은 고가되기 위해서는 많은 물건-예를 들면 휴대폰, 헤어 브러시, 화장품, 립스틱, 립크림, 얼굴 기름 제거용 페이퍼, 이어링, 거울 등등-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부모가 주는 용돈이나 맥도널드나 편의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넷째, 이들에게 있어 원조교제는 매춘을 동반하건 하지 않건 매춘이 아니다. (물론 원조교제가 모두 매춘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나 많은 경우 매춘을 동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에게 있어 원조교제는 단순히 일이

다. 실제 이들은 원조교제를 매춘이라고 부르기 보다 우리(팔기) 혹은 시고토(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원조교제가 있는 날 “오늘은 시고토(일)가 있어서 안되겠는데.....” 라는 표현을 쓴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36). 이들에게 원조교제는 돈이 떨어지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들은 원조교제는 일이라고 굳건히 믿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능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여 죄의식을 갖는 따위는 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시종일관 고수한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들은 자신이 하는 원조교제가 당당한 일이라고 감히 주장하지는 못했다고 구로누마씨는 지적하고 있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175) 문제는 결국 이런 쉬운 ‘일’에만 익숙해진 이들은 진짜 힘든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일본 원조교제 여자 대상자에게 상대방 남성은 돈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여자 청소년은 손님에겐 쓸데 없는 감정 따윈 없어요, 혹은 “아저씨들은 우리의 ‘지갑’이나 마찬가지죠.”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93) 물론 이들은 중년 남성에게 대가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충실하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좋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원조교제 상대방 남성에게 “파파”라는 매우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여중·고생 어느 누구도 진짜 아저씨와 사랑에 빠져 그러는 경우는 없다. 이는 이들이 성 관계를 맺을 때 파파와 자신의 남자 친구와 명확히 구분하려 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여학생은 파파와 관계를 맺을 때는 키스를 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스는 애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자신의 남자 친구를 위해 남겨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원조교제하는 일본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나 선행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친구와 선배는 매춘을 알선하기도 하고, 어떤 데이트 클럽이 단속에 자주 걸리는 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원조교제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받는지, 어떤 아저씨들이 좋은 아저씨인지, 나아가서 어떤 옷들이 유행하는지, 어떤 가방이 좋은지 등 원조교제나 고객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나눈다. 한편 서로 서로에게 정신적인 지지자로서, 어려울 때 고민을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원조교제를 계속하는데 친구나 선배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원조교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다.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을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것을 사는데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 원조교제 때문에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이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고, 졸업도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싶어하고,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직장에 취직도 하고 싶어하고 또한 결혼도 하고 싶어한다. 실제 이들이 바라는 미래는 극히 평범한 미래이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원조교제는 이런 이들의 평범한 미래에 대한 계획과는 상관없다.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는 차이가 난다.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 달리, 대부분의 원조교제 청소년은 중산층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면서 원조교제에 참여한다. 또한 생활비가 필요해 원조교제를 하기보다는 비싼 브랜드 옷, 구두, 가방,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원조교제 했다는 데 별 죄의식 없이 성장과정의 지나가는 한 과정으로 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이처럼 성매매 청소년과 원조교제 청소년은 아주 다른 배경에서, 아주 다른 자세로 청소년성매매, 혹은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과 일본의 원조교제에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의 특징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3)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의 특징 비교

기 준	성매매 청소년	원조교제 청소년
연령	13세 ~ 18세 (저연령층 다수)	주로 고등학생
재학여부	재학생과 중도탈락생 거의 반반씩	주로 재학생
가출여부	가출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반반씩	거의 가출하지 않은 상태
참여동기	돈 (용돈마련과 생활비마련 위주)	돈 (용돈마련과 사치품구입 위주)
출신가정	중산층과 저소득층 반반씩 양부모가정과 다른형태의 가정출신 거의 반반씩	중산층 대부분 양부모가정 출신 대부분
부모와친구관계	부모에 대한 강한 불신 친구에 전적으로 의지	부모에 무관심 친구나 선배에 전적으로 의지
상대성인남성 과의 관계	일회적, 성관계 위주 인간관계 배제	지속적일 수 있음. 성관계와 인간관계 모두 포함
성경험/성의식	성경험다수, 성의식 보수적	성경험이 전제되지 않음. 성의식 개방적
학교에 대한 생각	흥미, 관심 없음. 학교 중도탈락 가능성 높음.	흥미, 관심 없음. 학교생활 계속 유지함.
청소년성매매/원 조교제에 대한 생각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함.	대학 가기전 일시적으로 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함.
미래에 대한 생각/계획	절망적/계획없음	희망적/계획있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일본의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서로 비슷한 점도 갖고 있지만 서로 아주 다른 점도 갖고 있다. 다음에는 과연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가 각 각 한국의 청소년과 일본의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실제 이들의 배경과 태도가 다른 만큼 이들이 청소년성매매나 원조교제로부터 받는 영향력도 다른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3.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1) 한국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성매매가 참여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두말할 것 없이 매우 부정적이다. (신미식, 2000a, pp. 8-9)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성매매의 중독성이다. 청소년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상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년성매매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청소년성매매의 중독에 빠져들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항상 이 번만하고 안 할거야, 이 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다짐하면서도 손쉽게 돈을 버는데 익숙해진 이들 청소년들은 점 점 더 청소년성매매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쉽게 돈 버는데 익숙해진 이들은 굳이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높은 상품적 가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성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성이란 돈으로 사고 파는 것, 혹은 성이란 한 쪽의 성(일반적으로 남성)이 다른 한 쪽의 성(일반적으로 여성)을 착취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성매매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는 일반적이다. 성인 남성은 포르노 비디오에서 본대로 똑같은 행위를 청소년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혹은 1:2, 2:2 등의 혼음을 요구하기도 한다.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중 변태행위를 강요받았던 한 여학생은 바로 그런 성행위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청소년이 커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남녀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찌감치 남성에 대한 생각이 왜곡됨으로써, 이들은 더 이상 남성을 함께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항상 남성은 이들에게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비쳐지게 된다. 굴욕적인 성행위를 돈 때문에 강요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돈 때문에 굴욕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 청소년들은 한 인간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훗날 결혼하게 될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모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커졌다' 31.4%, '경험이 자꾸 떠올라 너무 힘들었다' 25.7%, '나를 소중한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었다' 20.0%, '나 자신이 추하게 느껴졌다' 20.0%로 청소년성매매 후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순길외 2001)

셋째, 이런 왜곡된 성의식, 남성의식과 더불어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제대로 성교육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무방비상태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이들 청소년은 피할 수 없이 임신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 낙태를 하게 된다. 혹은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낙태의 시기를 놓쳐 미혼모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청소년이 임신 8개월 쯤인 만삭의 몸으로 계속 원조교제를 하다 잡혀왔다. (경향신문, 2000년 8월)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원조교제할 생각을 다했느냐”에 그 청소년은 “여관비, 옷값, 병원비 등이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어른 4명 모두는 “배가 많이 불러서 임신하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20살은 넘은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청소년의 경우 거듭된 임신과 낙태로 인해 결국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항상 성병에 노출되어있다.

넷째,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항상 폭력에, 범죄에 노출된다. 청소년이 동의했건, 안 했건, 그리고 대가로 돈을 지불했건 안 했건 청소년성매매는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의 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이며 성범죄이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으로서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는 속성상 다른 폭력을 그리고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 즉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손쉽게’ 다른 형태의 폭력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한 예로,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원조교제를 한 20대 남자가 돈을 주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임모양을 구속했다. (경향신문, 2000년 7월 31일) 이 청소년은 약속대로 상대방 남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가 자고 있는 동안 목을 졸라 죽였다. 이 청소년은 돈 몇 푼에 자신의 몸을, 성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돈 몇 푼에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까지 내버렸다. 이외에도 청소년성매매가 쉽게 다른 폭력이나 범죄에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가 있다. 실제 원조교제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것을 비판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고, 원조교제한 결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자 바로 죽여 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원조교제를 한 후 상대 남성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는 ‘10대 꽃뱀’도 등장하였다. (문화일보, 2000년 8월 9일)

다섯째, 이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버린 성매매 청소년에게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들도 물론 다른 청소년처럼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꿈이나 미래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 꿈이나 희망을 물을 때 거의 침묵으로 답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특성상 어떤 다른 집단보다 같은 또래 집단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가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성매매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성매매와 달리 청소년성매매는 하는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청소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유와 상관없이 돈 몇 푼에 절도, 사기, 살인까지 하고 돈 몇 푼에 변태행위도 서슴지 않고 그룹섹스나 성행위 비디오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 일부 청소년의 행위나 태도는 다른 청소년에게도 쉽게 전이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했던 하지 않았던 청소년성매매의 영향권 상에 놓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결국 한국의 청소년을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감각적, 물질적, 폭력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의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원조교제는 성을 상품화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심지어는 청소년 여학생의 몸/성조차 고겔, 마고겔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매스컴, 매스컴에 의해 상품화된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성도 파는 고겔과 마고겔, 매스 미디어를 통해 고겔이라는 (혹은 마고겔이라는) 상품에 매혹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들을 만나고, 만지고, 그리고 그들과 자고 싶어하는 성인 남성, 고겔, 마고겔이라는 상품을 원하는 남성에게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내는데 여념이 없는 풍속업소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

럽 모든 구성요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원조교제라는 게임에 참여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원조교제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 게임에는 모두가 승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격상 원조교제는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게임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성격상 원조교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패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구로누마 가쓰시는 원조교제를 하는 여중·고생을 밀착 취재한 결과 이들 여중·고생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던, 미화하던 결국 원조교제의 피해자는 바로 이들 여중·고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원조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약간의 돈은 얻지만 대신 무엇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많은 귀중한 것을 잃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은 앞으로 사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한 가치관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권, 성적 유린을 당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이들은 어른들의 추한 세계만을 엿보고, 어른들은 불신하며, 그 경험으로 사회관을 기른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144) 아울러 항상 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여고생이 돈 때문에 가해자로서 테레쿠라 강도 사건에 간여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남성을 만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p. 7-8)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이들이 결국은 마약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이다. 원조교제를 하는 여중·고생들은 쉽게 돈을 벌고 또한 쉽게 돈을 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쉽게 마약에 노출된다. 일본의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는 스피드라는 마약이 인기가 있는데 고가의 마약이라 청소년들이 하기 쉬운 마약은 아니다. 그러나 쉽게 많은 돈을 번 여중·고생은 이런 고가의 마약을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 마약이 겉으로 보기에는 ‘야쿠자’와 같은 조직세력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약 거래의 이면에는 항상 무서운 조직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멋모르게 원조교제를 시작하여 돈을 벌

게 된 여중·고생들은 중국에 가서는 무서운 조직 세력과 만나게 된다. 원조교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청소년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중·고생들은 점 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은 어른들을, 사회를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영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위험한 게임의 패자는 누가 될 지 명확한데도 진작 당사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반면 성인 남성들은, 풍속업자, 매스 미디어는 이 게임에서 절대로 잃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게임의 룰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게임에 일시적으로 지더라도, 예를 들면 단속에 걸린 풍속업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자로 바뀐다. 성인 남성 역시 잃는 것은 돈 몇 푼인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정도의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매스 미디어는 속성상 절대로 지는 게임에 관여하지 않는다. 질 때쯤 되면 이들은 새로운 게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원조교제는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하지만 결국 이 게임의 패자는 여중·고생이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승자이다. 오히려 또 다른 패자를 찾는다면 미래의 일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 역시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 배경 속에 서 원조교제에 참여하지만 결국 그들도 한국의 성매매 청소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원조교제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청소년성매매에서나 일본의 원조교제에서나 청소년들은 절대로 승자가 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자신은 그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청소년성매매 참여로부터 얻었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다시 자아존중감을 가진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도 보았듯이 한국의 경우 성인 남성을 처벌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힘을 쓰고 있지 그것과 더불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의 선도·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제 일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성에 대해 훨씬 “자유 분방한” 이유에서인지 일본은 원조교제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언뜻 보면 상당히 안이하게 원조교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이 원조교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생활 존중이 지나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다. 김명학은 원조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1948년 전후해 베이비붐이 일면서 연령별 인구 구성상 두드러지게 팽대한 세대(단괴세대)인 부모를 지적하고 있다. 단괴세대인 부모들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녀들에 대한 고삐를 늦추었다.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라면서 아예 어떤 가치관도 주입하지 않았다. (김명학, 1999, p. 101) 그리고 지금 원조교제가 바로 자기들의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어찌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있다.

학교의 경우, 자신들의 학생이 원조교제에 관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평판이 나빠지고 자연 학교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생 중에 원조교제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퇴학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즉 학교는 ‘우리학교에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퇴학조치를 취했기 때문에)라는 환상과 같은 착오를 고집함으로써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구로누마 가쓰시, 1999, p. 250)

단지 몇 가지 법적 대응책만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아

래와 같다. (김병학, 1999, pp. 111-117; 이경재, 2001, pp. 3-4)

첫째, 형법 제 177조 강간죄(1908년 제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소녀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13세 미만의 소녀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둘째, 매춘방지법(1957년 제정)이 있다. 매춘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관리매춘(장소제공, 알선)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춘을 직접 권유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이나 매춘여성은 직접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지도의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원조교제는 따라서 대부분 처벌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에게나 후배에게 매춘을 알선하게 되면 이는 매춘방지법을 위반하는게 된다.

셋째, 아동복지법(1948년 제정)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 34조는 음행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음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 위반했을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여기서 음행이라 하면 '성품숙점에서 추잡한 일을 시킨 것'도 포함하고 있어 많은 풍속업소들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또한 테라크라나 데이트 클럽 등 원조교제를 중개하는 업소의 경우도 '아동에게 음행 하게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원조교제의 상대방 남성이 여자 청소년에게 음행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넷째,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이 있다. 이 법률은 국내의 원조교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소녀 매춘이나 소녀 포르노 매매를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의 아동과의 대가를 지불한 성교 등을 매춘으로 금지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교나 성교와 유사한 행위를 묘사한 것을 판매하거나, 업으로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진열하거나 혹은 같은 목적으로 제고, 소지,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동 매춘이나 아동 포르노의 제조를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거나 거주국 이외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매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 아동 포르노 배포 및 판매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 아동의 인신매매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섯째,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자치 단체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이 조례 중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잡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의 음행처벌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6개월~2년의 징역 또는 10만~1백만 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 원조교제를 하는 다수의 성인 남성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 밖에 1985년에 '풍속영업단속법'이 만들어져 풍속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 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테레크라는 다시 '테레크라 규제조례'가 만들어져 규제를 받게 되었다. 청소년건전육성조례조차 없었던 도쿄 도에서도 1997년 8월 '테레크라 및 데이트클럽 규제조례'가 실시되고 드디어 12월부터는 '청소년 건전 육성법' 및 '매춘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법적 규제는 한 발 늦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일단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나서야 규제법,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는 이미 그 업소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새로운 업소가 만들어져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즉 풍속업소는 어떠한 단속과 규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갖고 범망을 피해 새로운 업소로 거듭나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뒷북치는 식의 법적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원조교제에 대해 한국만큼 심각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위에서와 같이 최근에 새롭게 법도 만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조교제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이다. 다시 말해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는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결국 일본의 원조교제에 대한 이런 느슨한 대처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2001년 8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심사 받는 과정에서 원조교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권고받았다. (한겨레 2001년 8월 24일자)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 예를 들면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반면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되었듯이 청소년을 형사 처벌하는 대신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붙잡힌 청소년은 515명인데 이 중 솥터로 보내진 청소년은 22명, 귀가조치된 경우는 458명, 보호시설로 보내진 경우는 35명이다. 특히 청소년성매매 참여 청소년 중에 과반수가 가출을 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붙잡힌 청소년 대부분 귀가 조치했다는 것은 청소년의 선도,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이한 대책이라고 보여진다. 만약 빠른 시일 안에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일본에 이어 청소년성매매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청소년의 대부분을 귀가조치시키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선도, 보호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대안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시켜보려고 한다. 물론 유형화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선도·보호 대책이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4. 성매매 참여 청소년의 유형화

- 1) 성매매 청소년의 가출여부에 따라 가출형, 집거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 참여 청소년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자면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과연 그들이 가출상태인가 아니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출형이나 아니면 집 거주형이나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원조교제 참여 청소년과 달리 한국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출을 경험했거나 가출 상태에 놓여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서울검찰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 중의 약 50%는 가출 상태에 있다. 자녀안심 서울협의회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 30명 모두가 가출 경험이 가출 회수도 11번 이상이 13명이었다. 첫 가출연령은 12세 이하가 4명, 13세가 5명, 14세가 8명, 15세가 8명 등 25명 (약 83%)이 조기 가출자였다. 같은 기관에서 낸 2001년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청소년 40명 모두가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연령은 12세 이하가 5명, 13세가 13명, 14세가 10명, 15세가 9명으로 거의 90%가 조기 가출자였다. (고성혜, 2001) 서울검찰청과 자녀안심서울협의회 자료 사이에 큰 차이는 전자는 현재 가출 상태에 대한 조사이고 후자는 가출 경험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건 성매매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가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가출 상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가출 당시 연령이 어리다는 것과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성매매 참여 청소년의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과 분명히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이 장기화되면 무엇보다 의식주 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부각된다. 의식주해결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은 이들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한 일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출해서 해 본 일을 살펴보면, '성관계'가 22.9%, '이성친구와 동거' 20.0%, '노숙' 20.0%, '게임방이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움' 17.1%, '단란주점, 노래방 아르바이트' 17.1%, '철도' 17.1%, '성폭행당함' 14.3%, '약물이나 환각제 복용' 14.3%이다. (황순길외, 2001) 이처럼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아르바이트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돈을 버는 것은 매우 힘들다. 결국 가출이 장기화되면 거의 많은 여자 청소년이 매매춘의 길에 빠져들게 된다. 또한 가출형의 경우 이들을 지도, 보호해줄 성인 없이 주로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살아가게 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반면 집거주형의 경우 대부분 부모를 속여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지만 아직 보호받을 부모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가출형에 비해 비교적 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거주형의 경우 대부분 용돈마련을 위해, 혹은 비싼 옷, 신발, 화장품 등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출형보다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

2) 청소년성매매의 참여동기에 따라 용돈벌이형, 생계형, 호기심(선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성매매 청소년에게 왜 청소년성매매를 하느냐고 물으면 거의 90%이상이 돈 때문에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용도는 청소년에 따라 아주 다르다. 서울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용돈마련이 50%, 가출생활비가 25%, 그리고 호기심이 15% 정도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가출한 상태에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와 용돈과는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용돈마련이라는 항목에 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청소년성매매의 참여 동기 중 가출생활

비 비율은 25%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용돈벌이형은 청소년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순전히 사치품을 사거나,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는 돈은 시간당 평균 1500원 내지 2000천원으로 많이 벌어들였다 한 달에 10만원이상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한달 평균 용돈이 4-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핸드폰의 확산 등으로 실제 청소년들이 한 달 쓰는 용돈은 많게 30-40만원까지 된다.(한국일보, 2000년 3월 14일자) 위에서 보았듯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우 핸드폰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 자연 청소년들은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지만 워낙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힘들고 힘들게 찾더라도 노동조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을 한 번에 한 시간 정도의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이 겪은 경험은 매우 부정적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다른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식당일 그런 것 말고는 서빙을 해도 똑같다. 똑같이 성추행 한다. 서빙을 해봤는데 서빙하면 괜히 지나가는데 엉덩이를 때리면서 술 한잔할까? 솔직히 술집여자도 아니고.' (조아미·이명화, 2001, p. 30)

생계형은 돈을 목적으로 해도 번 돈은 먹고, 자고, 입고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대부분 사용된다. 생계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출 상태에 있다. 즉 이들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가출시 우선 잘 곳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고 또한 먹고 입고하는 것 역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쉽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소자들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만 일을 할 수 있다. 단지 본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일 최대 8시간, 1주일 48시간 일할 수 있다. 법적으로 연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의 90%(시

간당 1679원)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겨레, 2001년 7월 30일자) 왜냐하면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적은 임금으로 청소년들은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생계형 청소년에게 한 번에 '엄청난' 고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성매매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호기심(선망)형은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친구를 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친구들이 돈을 잘 쓰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하는 유형을 말한다. 청소년성매매로 잡힌 김모(17)양의 경우 “가출 경험은 없었다. 친구가 원조교제 뒤 옷을 잘 사 입고 친구들에게 선심 쓰는 것을 보고 성매매를 하게 됐다. 자신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화일보, 2001년 8월 6일자) 이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돈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처음 동기는 돈보다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성매매 청소년의 재학여부에 따라 재학형, 학교 중도탈락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원조교제 경우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청소년은 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실제 청소년이 학생이나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인 남성 대상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나이이다. 즉 이들에게는 어린 청소년일수록 더 좋다. 그리하여 12살, 13살 짜리의 초등학교 학생까지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실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중 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5.5%이고 이중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이다.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2000, p.11)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 원조교제에 참여하는 중학

생의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조교제 대상이 고등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못하나 학생 생활의 부적응 학생만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몇 차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모범생이며 학교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래 아마 크게 기사화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재학생은 별로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중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 점은 원조교제를 성장 과정에서 지나가는 한 과정으로 보고 대학 진학과 그 이후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일본의 원조교제 참여 청소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성매매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한다는 점이다.

중도탈락형의 경우 대부분 가출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학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들-지나친 공부 위주의 분위기, 폐쇄적인 분위기,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관심-을 개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중도 탈락한다. 또한 학교 곳곳에 내재해 있는 남녀불평등 문화, 구조 역시 학생들은 밖으로 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성매매 대상자 중 학교중도탈락형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4) 성매매 청소년의 출신 가정형태에 따라 양부모 가정출신형, 한 부모 가정출신형, 다른 형태의 가정출신형 (소년소녀가정, 조부모 가정 등)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른 중산층가정출신형, 저소득층 가정 출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양부모 가정과 중산층의 가정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경제적 형편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나은 편이다.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출신 가정은 특별하게 어느 가정 형태 출신이라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서울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정상”가정이 41.7%, 결손가정이 54.2%이다. 즉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중에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을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하는 데는 양부모출신의 가정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가정에 불화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부모로부터 해당 청소년이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느냐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와만 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와 살 경우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조건상의 어려움은 청소년을 쉽게 성매매에 빠지게 한다.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양부모 가정 출신 혹은 중산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집에 거주하면서 모자라는 용돈을 마련하거나 호기심에서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반면 한 부모 가정, 다른 형태의 가정 혹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청소년의 경우는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5)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기간에 단기형, 장기형(습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의 경우 돈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적은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시작하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청소년들은 다짐하지만 결국은 '딱 한 번만 더' 혹은 '이왕 버린 몸 돈이 벌자'라는 자포자기적 심정에서 장기적, 상습적이 되게 된다. 1999년과 2000년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 횟수는 1회의 경우 23.5%, 2-4회 38.2%, 5-9회 9.8%, 10회 이상은 27.5%, 모름이 1.0%였다.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0, p. 15)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10회 이상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수 백 회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중 중퇴생 P(18)양의 경우 300여 차례 성인들과 원조교제를 하여 잡히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2001년 3월 15일자)

일반적으로 청소년성매매는 일회적인 것이 특징인 상황에서 10회 이상하였다는 것은 혹은 그 이상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10명 이상의 혹은 수 백 명의 다른 성인 남자를 상대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하여 잡히더라도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 그들이 받는 보호처분은 주로 귀가조치 혹은 단기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다. 그러나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 조치된 청소년은 많은 경우 다시 가출한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에 맡겨진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1-2일 머문 후 무단 이탈하여 다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다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비율이 61%나 된다는 것은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일단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게 되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휘, 2001, p. 17) 검찰에서는 결국 상습적인 성매매 청소년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위의 300명과 성관계를 맺은 김양 역시 윤락 행위방지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성매매에 장기적으로 오래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복귀 가능성은 훨씬 적다. 특히 구속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더 더욱 사회복귀가 힘들게 된다.

단기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그만 둔 이유는 몸 팔아 돈 벌기 싫어서 50%, 적발되어 처벌받기 싫어서 20%, 더 이상 주위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20%이다. (고성혜, 2001) 즉 청소년성매매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의식적 판단이 중요하고 처벌이나 주위 사람을 인식해서이다. (고성혜, 2001, p.8) 이런 점들은 청소년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할 점이라고 본다.

6) 청소년성매매에 활용되는 매체에 따라 인터넷형, 핸드폰형, 소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전화방, 보도방, 혹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였지만 이런 매체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다른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이것들의 활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남겨 놓는 방식을 통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66.7%, 전화방 26.0%, 핸드폰 3.3%이다. (김종휘, 2001, p. 7) 그러나 요사이 인터넷 채팅방에 대한 감시, 감독이 심해지면서 핸드폰이 주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채팅방의 경우 몇 만개의 방이 동시에 열려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핸드폰은 감시가 불가능하다. 현재 청소년의 거의 90%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성매매청소년은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무작위로 “원조교제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부산일보, 2001년 월 30일) 어찌면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단계에 이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청소년이 먼저 청소년성매매를 제의하는 경우는 여전히 14.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반면 성인 남성이 성매매를 제의한 비율은 76.8%에 이른다. (김종휘, 2001, p. 9)

이런 첨단기기 사용 외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친구의 소개다. 용돈을 많이 쓰는 친구를 부러워 할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 그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하는 청소년성매매에 자신도 한 번 참여해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호기심은 종 종 현실화된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혼자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친구를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청소년성매매할 때 낯선 남자 성인을 혼자 만나야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 만에 하나 청소년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비해서, 청소년성매매 후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 장소까지 친구를 동반하여 가기도 한다. 즉 청소년의 특성인 끼리 문화가 청소년성매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문화는 청소년 사이에서 청소년성매매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7) 청소년성매매에 혼자 참여하는 나홀로형과 집단으로 특히 친구와 더불어 참여하는 집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가 종 종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이 성인에게 행하는 범죄보다 성인이 청소년을 속여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위협하여 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돈, 힘 (여기서는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적인 힘도 포함), 그리고 나이 모두를 갖고 있는 성인에 비해 청

소년은 성/몸 외에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 즉 성인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을 위협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것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연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겁 없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지만 차츰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청소년성매매에 친구를 동반하기도 한다. 청소년으로부터 최대한의 성적 쾌락을 얻고 싶어하는 성인은 그런 상황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청소년 둘과 혹은 그 이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혹은 성인 여럿과 청소년 여럿이 함께 참여하는 그룹성행위를 즐기기도 한다. 서울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1 대 1(‘정상’)은 85.9%, 오랄 섹스는 9.2%, 1 대 2는 4.9%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룹섹스(2 대 2도 포함)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1 대 1(“정상”)의 경우도 많은 경우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한 성매매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와 그대로 하자고 한다면서 다른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진짜 솔직히 전부 다 이상해요. 솔직히 결혼을 했으면,지 마누라랑 하면 되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요. 진짜 돈주면서 까지 하는 일들이...” (조아미·이명화, 2001, p. 25) 특히 최근 그룹섹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성매매가 더욱 더 변태적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는 청소년성매매가 얼마나 변태적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본다. “동생이란 걸 아는 사람과도 2:1로 했다.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아저씨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우린 그냥 혼자가면 무서워서 같이 나간건데..” (조아미·이명화, 2001, p. 29)

8) 성매매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반항형, 의존형, 무관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대부분 청소년들은 성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성인은 부모를 포함하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청소년들이 상대하는 성인 남성들 모두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성매매에 관심을 갖는 동기는 표면적으로는 돈 때문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이나 관심을 성인들- 특히 부모나 선생님-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성인남성에 대해서 매우 모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나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관심을 이들에게 받고 싶어하면서도 또한 부모나 선생님에게 가졌던 불만이나 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을 생각하기도 한다. 참여 청소년의 경우 처음에는 지금까지 다른 성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관심을 성관계를 맺게 되는 성인에게 기대하는 의존형이 대부분이지만 곧 그들도 다른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혹은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성인에 대해 불만을 갖는 반항형으로 바뀐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 성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모든 성인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무관심형을 바뀌게 된다. 무관심형에서 청소년들은 더 이상 성인을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 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여 이모 집에서 눈치밥 먹고 살던 아현의 경우는 대표적인 무관심형의 경우다. 가출 후 40여명 정도의 아저씨들을 만나면서 아현양은 더 이상 아저씨에게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정그럽지도 않고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도 않다. 아저씨들은 아현에게는 단지 돈일 따름이다. (한겨레, 1999년 11월 18일자)

9) 성매매 청소년의 범죄 가담 여부에 따라 단순가담형, 범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매매 청소년은 대부분 초기에는 청소년성매매에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한다. 즉 단순가담형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성매매가 좀 더 조직적이 되고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하게 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석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듯이 범행동기 역시 돈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준다는 돈을 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을 하는 경우,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조직적으로 청소년성매매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청소년성매매로 인해 임신된 경우 아이를 낳자마나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지만 청소년성매매가 장기화되면서 범죄와 쉽게 연결된다. 그래 '소녀포주'도 나타나고, '릴레이 원조교제'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룹섹스나 성행위 비디오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계약원조교제' 까지 생겨난다. 또한 살인이나 도둑질, 협박, 공갈 같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더라도 약물이나 음주, 마약으로 쉽게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 성매매 특성상 대상자들은 약물, 술, 마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술, 마약, 약물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성매매 사건들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비쳐볼 때 한국에서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 성매매 청소년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따라 희망형
과 절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야지 등, 일반 청소년들이 갖는 희망을 그대로 갖고 있다. 비록 실제로 이들의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지에 대해 확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들이 아직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경우 대부분은 전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하루하루 무력하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살아간다. 몇몇 성매매 청소년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다. (조아미·이명화, 2001, pp. 28-29) 아니면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꿈,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건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학교 중도탈락자로 학습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 현재 뚜렷하게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는다는 점은 이들이 과연 청소년성매매 (혹은 매매춘 관련업)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과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있을 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10개의 기준을 근거로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유형화해보았다. 물론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준의 수가 많아질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 10개를 골라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을 유형화해보았다. 무엇보다 이 유형화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너무나 다른 배경에서, 다른 목적으로 청소년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을 단지 청소년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청소년성매매를 하였더라도 가출 청소년의 경우와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인 남성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중요하다. 물론 모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이라도 기준이 마련된다면 좀 더 청소년 개인의 배경이 존중된 개별화된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는 현재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 대책의 실상은 어떤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도된 대로 성매매청소년을 선도·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유형에 맞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제시해볼 것이다.

IV. 성매매청소년의 유형화에 따른 보호 대책 모색

1. 성매매 청소년 선도·보호의 현황과 개선 방안

1) 법적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 15조(보호처분)에 따르면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 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 3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윤락행위방지법상의 선도보호시설이란 ① 요보호대상자로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20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복지시설과 ② 여성복지상담원이 요보호대상자를 상담한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도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서 일시보호소에 입소한 요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유희일 외, 2000, p. 441)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선도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김지선, 2001, p. 56) 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②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③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④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 회복을 위한 치료·집단상담프로그램의 운영, ⑤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⑥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 기관에의 위탁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센터는 청소년 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재활센터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는 그 구성과 조직의 활동방향에 대한 청사진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 소년부 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호처분 유형이 아니다. (김지선, 2001, p. 57)

위에 제시된 법에 따른 성매매청소년의 보호처분 내용을 도표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근거법	보호처분의 내용	기간	대상
소년법	1호처분: 보호자 등에의 감호 위탁	6개월 (1차 연장가능)	①/②
	2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6개월	
	3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2년	
	4호처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6개월 (1차 연장가능)	
	5호처분: 병원·요양소에의 위탁	6개월 (1차 연장가능)	
	6호처분: 소년원에의 단기송치	6개월	
	7호처분: 소년원 송치	부정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선도보호시설에의 선도보호 위탁	6개월 (1차 연장가능)	①/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의 선도보호위탁	6개월 (1차 연장가능)	②

* 출처: 박병식, 2000. p. 14

- 주: 1. 적용대상에 있어서 ①은 19-20세 청소년을 나타내며, ②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나타낸다.
2. 소년법상의 제1호처분과 제2호처분 및 제3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3.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제2호처분 또는 제3호처분을 내릴 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달리 현실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조치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순귀가조치, 들

째, 보호처분, 셋째, 선도보호시설, 넷째, 쉼터 등이다.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단순귀가조치

현재 성매매청소년에게 취해지는 대표적인 조치는 단순귀가조치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515명의 청소년이 붙잡혔다. 이 중 458명이 귀가조치 되었고, 35명은 선도·보호 시설로 보내졌고, 22명은 쉼터로 보내졌다. (김성이, 2001, p. 57) 특히 성매매 청소년에게 취해진 단순귀가조치는 소년부 판사에 의해 내려진 보호처분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규정상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 충동적 일탈 청소년에게는 단순 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단순귀가조치된 청소년이 단순히 일시적, 충동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성매매청소년의 50% 정도가 위에서도 보았듯이 가출상태이고 또한 가출의 이유가 가족과의 문제 때문인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한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개선의 조건 없이 그대로 청소년을 돌려보내는 것은 청소년을 다시 청소년성매매로 내모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경찰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소년사법제도와 접촉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즉 청소년에 대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주로 미아, 기아, 가출소년이 포함)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김지선, 2001, p. 47) 그러나 흥미롭게도 현재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잡혀온 청소년에게 경찰은 대부분 귀가조치라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이 단순귀가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아마 첫째,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청소년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의 반영일 수 있고 둘째, 성매매 청소년에게 상대방 남성의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타협안으로 볼 수도 있다.

단순귀가조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단순조치가 취해지는 비율(90%)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단순귀가조치가 취해질 경우 필요한 조사, 특히 청소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귀가조치를 시키기 전에 과연 보호자가 청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귀가 조치 시키더라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후속점검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일단 귀가 조치되면 더 이상 청소년의 향방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물론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소년경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인격과 환경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여 「소년법환경조사서」와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김지선, 2001, p. 51) 이런 상황에서 단순귀가조치 처분보다는 보호처분 2호, 3호 즉 귀가조치와 보호관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거나 아니면 케이스 위커적 성격을 지닌 전문소년경찰을 양성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배경을 조사하여 귀가조치를 시키고 귀가조치 시킨 후에도 후속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병식, 2000, pp. 9-10)

3) 보호처분

위에서 보았듯이 성매매청소년의 대부분은 단순귀가조치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소년부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현황을 보여주는 아래 표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연도 \ 구분	보호처분유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계
2000.7.1 - 12.31	-	-	4	-	-	-	-	4
2001.1.1 - 6.30	1	3	11	2	-	-	-	17
계	1	3	15	2	-	-	-	21

* 출처: 법무부 소년2과 내부자료 (김지선, 2001, p. 58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보호처분을 받은 성매매청소년은 많지 않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성매매청소년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은 단지 3호 처분 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 이후 습관성을 보이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그 밖의 성매매 청소년도 단순귀가조치 대신에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재활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지검 소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그나마 2001년에 들어서는 보호처분 사례가 증가했다. (김지선, 2001, p. 50).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 청소년 중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성매매청소년들에게 다른 청소년들과 차별성 없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김지선, 2001, p. 59) 특히 성매매청소년에게 많이 내려지고 있는 2호처분, 3호처분의 경우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이나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보호관찰인력이 부족해 이들과는 겨우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날 수밖에 없고 또한 성매매청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특별하고 개별화된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선, 2001, p.65) 다시 말해 현재까지 성매매청소년을 위해 보호처분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고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김지선은 보호처분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김지선, 2001, pp. 65-70) 첫째, 소년경찰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현재 소년담당경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소년경찰관과는 거리가 먼 현 상황에서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사실 확인과 그 원인과 배경을 해명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원조할 수 있는 케이스 워커적 성격을 지닌 전문적인 소년담당 경찰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소년부에 송치되어 온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단계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과학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원에 접수한 모든 보호사건을 반드시 심리개시 전에 조사하도록 소년법을 규정하고 소년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소년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처분 (2,3호 처분)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현재 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이 수 백 건 되는 상황에서 차별적이면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 3호 처분의 경우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최대 활용하여 이들 성매매 청소년에게 필요한 전문 상담프로그램, 인성교육과 같은 재활교육프로그램을 개

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직접 가담하여 사회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멘터링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을 폐지하고 소년수탁시설위탁처분(4호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성인과 청소년을 함께 수용한다는 점, 그리고 퇴원이 자유롭다는 점등으로 선도보호시설위탁 처분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고 오히려 유사한 성격을 갖는 소년수탁시설에의 위탁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년수탁시설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원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된 환경이 아니면, 소년이 시설운영자의 지도하에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정에서 용이하지 않은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연계를 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섯째, 병원 및 요양소 위탁처분(5호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 성매매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년법 상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적정한 수탁기관의 수를 확보하고, 수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4) 선도보호시설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선도·보호 조치는 소년부판사가 윤락행위방지법에 명시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현재 보호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서울에는 9개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는데 그것의 명칭, 정원, 일시보호 시설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서울에는 은성직업기술원(35), 시립부녀보호소(50), 한국여성의 집(30), 시튼해바라기쉼자리(10, 일시보호소), 나자렛 쉼자리(10, 일시보호소), 우리들 쉼자리(10, 일시보호시설), 평화의 샘(10, 일시보호시설),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10, 일시보호시설), 성심 어머니의 집(10, 일시보호시설)이 있다. 부산에는 부녀복지관(70), 구세군 신애관(50), 구세군 여성복지관(100, 일시보호소)이 있고 대구에는 가톨릭여자기술원(50), 카톨릭 수지의 집(10, 일시보호소)이 있다. 대전에는 대전여성직업보도(55), 우리청소년쉼자리 (10, 일시보호소)가 있고 경기도에는 모퉁이쉼터(20, 일시보호소)가 있다. 충남에는 충남여성직업보도원(50)이 있고, 전남에는 여수사랑의 집(50), 경북에는 희망의 샘 쉼자리(10, 일시보호소)가 있다. 경남에는 창원여성의 집(20), 해바라기 쉼자리(14, 일시보호소), 그리고 젊음의 쉼자리(12)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선도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23개가 있고 수용정원은 모두 696명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2000년 하반기 전까지 10개의 선도보호시설이 있었는데 2000년 하반기에 비인가로 있던 선도일시보호시설(청소년쉼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국에 선도보호시설 11개와 선도일시보호시설 12로 합쳐 모두 23개의 선도보호시설이 있다.

선도보호시설에서 성매매 청소년 보호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1. 4 현재)

시설명	계	보호중	퇴소자	비고
계	171	70	101	
한국여성의 집	22	8	14	서울
은성직업기술원	30	18	12	"
나자렛센터	5	5	.	"
구세군여성복지관	53	9	44	부산
구세군신애관	40	20	20	"
여수사랑의집	21	10	11	여수

*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매 청소년 보호시설 의뢰기관 및 보호의뢰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1. 4 현재)

구분	계	경찰	타시설	부모	자진입소	기타
계	171	63	31	58	14	5

*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에서 보았듯이 소년부 판사가 해당 청소년을 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는 1건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의뢰했거나 아니면 부모가 의뢰하여 입소하게 된 경우다.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선도보호시설 위탁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낙 선도보호시설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다. 경기여자기술원 화재 사건이후 해당 자격자뿐만 아니라 의뢰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 선도보호시설을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대부분 선도보호시설의 경우 겨우 정원에 과반수 정도만을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선도보호시설은 성매매청소년을 위

한 중요한 선도·보호 시설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시설로서 선도보호시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정미, 2001, pp. 105-106; 조현순, 2000, p.19)

첫째, 과거 경기여자기술원 화재사건 이후 선도보호시설은 입소자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로 알려져 해당 청소년들이 입소하기를 꺼리고 있다. 화재사건 이후 강제적으로 시설 입·퇴소를 결정하던 것을 입소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퇴소를 결정하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입·퇴소가 자유롭다는 것은 성매매 청소년들에게는 꼭 좋은 규정만은 아니다. 경찰의 의뢰에 의해 입소한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퇴소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즉 일정 기간 머물면서 재활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도 여전히 같은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이 단지 성매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 그리고 환경(가출, 유흥,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로 문제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 없이 함께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전문 상담사나 전문 심리 치료사의 전문 상담, 전문 심리 치료가 필요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윤락행위방지법은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①일시보호소, ②선도보호시설, ③ 자립자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제공되는 시설은 일시보호소와 선도보호시설 정도이다. 성매매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가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선도보호시설을 퇴소할 경우

갈 곳이 없게 된다. 선도보호시설이 가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김지선 같은 경우 성매매청소년의 선도보호위탁을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보호할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명백을 유지해온 선도보호시설은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선도보호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설로 바꾸느냐에 있을 것이다.

선도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선도보호시설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선 정부로부터 현실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 지원 100%이지만 지원비 책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인건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 낙후된 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전문 상담사, 심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다면 재정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정미, 2001, p. 105) 둘째,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 단계에서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인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 단계에서는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기조절 프로그램, 책임감, 인내 향상 프로그램, 3 단계에서는 진로나 적성에 맞는 진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미, 2001, p. 106) 선도보호시설에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청소년과 일반 성인과 함께 수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청소년과 일반성인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보호시설중 한 두 군데를 골라 청소년만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정미, 2001, p. 109)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필요로 하는 성매매청소년에게는 다른 법

적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선도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한 편 이런 통제 조항이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호시설의 단계화, 연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자립, 자활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자립, 자활시설은 극히 드문 편이다. 다른 경우도 물론이지만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서는 보호 시설이 좀 더 단계적으로 특성화되어 자립, 자활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일시보호시설(쉼자리)에는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선도보호시설(중장기보호시설)에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앞으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회 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도보호시설에서 진로, 취업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배움자리(직업보도시설)와 연계하여 진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 시설(디딤자리)로 옮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송연순, 2001, p. 62)

5) 쉼터

쉼터는 비록 법적으로 공식적인 성매매 청소년 선도·보호 시설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선도보호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성매매 청소년들이 더 선호하는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개의 쉼터가 있고 9개는 중앙정부에 의해 그리고 또 다른 9개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47개는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김성이, 2001, p.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붙잡힌 청소년 중에 선도보호시설로 보내진 청소년이 35

명인데 반해 청소년쉼터로 보내진 경우가 22명이다. 즉 이 수치는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로서 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쉼터가 비인가시설로 정부로부터 전혀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시설 낙후의 문제, 전문적 인력 부족의 문제, 장기적이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비인가시설로 말미암아 이 곳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의료보호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쉼터가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실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청소년이 함께 살아야 하기 상황에서 자칫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쉼터를 좀 더 특성화하자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 (전경숙, 2001, p. 115) 모든 쉼터를 청소년 선도·보호 시설로 인가한 후 적절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별 혹은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쉼터별로 다르게 제공하게 되면, 지금껏 청소년 선도·보호 시설이 가지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지만 참여 동기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실제 같은 성매매 청소년이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역시 다 다르다. 그러나 현재의 선도·보호시설은 시설규모나 인력, 재정 면에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쉼터가 문제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성교육으로 특성화된 쉼터에서는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정기간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교육만을 집중적으로 받고 기본생활교육으로 특성화된 쉼터에서는 기본생활교육만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와 선도·보호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 수준이 낮고, 관심도 적은 상태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좀 더 개별화된 선도·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선도·보호 조치조차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전문 인력, 전문 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현재 상황은 이렇더라도 한국에서 청소년성매매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보호 조치가 좀 더 전문화, 개별화, 체계화 되어야한다고 본다. 신상공개 논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선도·보호 조치를 제공할 까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끝으로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 조치가 좀 더 전문적이 되고, 좀 더 개별화되고, 또한 체계화되는데 작은 일익이라도 담당하고자 위에 제시한 성매매 청소년 유형에 맞는 대책,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제시해보려고 한다.

2. 성매매 청소년 유형에 맞는 적합한 대처 방안 모색

위에서 성매매 청소년은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특성을 토대로 유형화되었다. 실제 성매매 청소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알게 되면 바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선도·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 청소년이 가출형에 장기형일 경우, 절대로 귀가 조치시켜서는 안되고 바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집거주형에 용돈벌이형일 경우, 1, 2호 보호처분이나 1,3호 보호처분을 내리고 아울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적합한 선도·보호 조치를 알게 되면 최소한 현재보다는 더 나은 개별화된 선도·보호 조치를 해당 청소년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끝으로 본 연구자는 각 유형에 맞는 선도·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각 유형에 맞는 선도·보호 조치를 내릴 때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출형, 집거주형

일단 성매매 청소년을 처음 접한 경찰관은 청소년이 가출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출상태인 것이 확인되면 가출의 정확한 원인과 가출 회수, 가출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조사 사실을 토대로 청소년의 신상카드를 작성해야한다. 특히 모든 기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지만) 필요한 때 다른 사람도 그 청소년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출형의 경우 여러 번 가출의 경험이 있고 가출 기간이 긴 경우 절대로 귀가 조치와 같은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 특히 가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만약 가정에서의 성폭행 경험, 혹은 물리적 폭행의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경우 더 더욱 귀가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을 시설로 보낼 경우도 이들의 가정에서의 성폭행, 물리적 폭행 경험을 알려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경찰관이 이런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문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이런 임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면 집거주형의 경우 처음 청소년을 조사하는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특히 가정상의 문제 혹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지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가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귀가조치를 시켜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부모와 청소년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알선하여 일정기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는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성매매청소년이 다시 가정 생활에, 학교 생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용돈벌이형, 생계형, 호기심형

용돈벌이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학생일 가능성이 많다. 단지 핸드폰을 바꾸기 위해서, 좋아하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서, 브랜드 옷, 구두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청소년의 경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해 물질추구 가치 외에도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1,2호 보호처분이나 1,3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계형의 경우 가출과 직접 연결된다. 생계형의 경우 무엇보다도 다시 청소년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고 아울러 쉼터나 선도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머문 후에도 그냥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멘터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관심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성인 혹은 멘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호기심형의 경우 순수하게 호기심에서 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 보다 쉽게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지만 곧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용돈마련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호기심형 역시

결국은 용돈마련형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호기심형의 경우는 이런 호기심형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학교나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학형, 학교 중도탈락형

재학생의 경우 일단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측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 역시 부모 교육을 받아 학생이 하루빨리 학교 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재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데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청소년에게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해당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중도탈락생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져 진로, 직업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능한 한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힘들 경우 대안교육 형태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혹은 이들에게 일정기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정미, 2001, p. 108) 아니면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기존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박용철, 2001, p. 119) 비록 많은 재정 투자를 요하지만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고등학교)는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 생활교육, 그리고 필요한 학력을 모두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교육 형태라고 생각된다.

4) 양부모 가정출신형, 한 부모 가정출신형, 다른 형태의 가정출신형 혹은 중산층 가정 출신형, 저소득층 가정출신형

부모들의 불화나 이혼, 별거는 청소년이 가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가출은 다시 청소년성매매로 이어진다. 실제 청소년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할 때 양부모 가정 출신이나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관심이나 사랑이 충분히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때는 이들이 어느 가정 출신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부모에 대해 불만이 있어 일시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을 경우는 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들에게 가능한 한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멘터링 프로그램이나 큰 언니(Big Sister) 프로그램 등이 이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알선하여 부모가 청소년에게 좀 더 적절하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로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허락할 경우 쉼터나 선도보호시설에 머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성매매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주는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청소년의 복지와 가정의 복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새로 개정된 청소년복지법에는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정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 복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비행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 단기형, 장기형

일시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경우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가 부모에게 들킬까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은 청소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점은 부모 교육 등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의 경우 습관성을 띠고 심지어는 중독증세까지 보이게 된다. 이런 경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청소년이 오랜 기간 청소년성매매에 머물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청소년성매매가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거의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성인에 대해, 사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되고, 아울러 심각한 임신, 낙태, 성병, 약물 등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성폭력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성격장애, 자존감 상실, 대인관계 불안증 등 심리적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 빨리 청소년을 위한 전문치료 병원 혹은 요양소가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습성이 판명된 청소년의 경우 구속처분을 하는데 구속처분보다는 병원, 요양소에 위탁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적합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6) 인터넷형, 핸드폰형, 소개형

청소년성매매 매체로 사용되는 인터넷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시가 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은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매체이기도하다. (66.7%) 특히 청소년성매매에 이용되는 인터넷은 주로 PC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일정 시간 이후에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일 것이다. 인터넷과는 달리 핸드폰의 경우 거의 감시가 불가능한 매체이다. 그러나 현재 핸드폰 소유의 확산 정도를 보면 앞으로 핸드폰은 계속 청소년성매매에 중요한 매체 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청소년이 핸드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특히 핸드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청소년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한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친구의 소개를 통해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나홀로형, 집단형

물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변태적인 성행위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보다 집단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 그만큼 변태적인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경우에도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하물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것은 자명하다. 우선 인격적인 모독으로 인해, 자존감의 상실을 겪게 되고, 비록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성매매가 이들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들의 자존감 상실의 정도는 어떤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진단을 토대로 적절한 장기간의 정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론식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이런 경험을 한 청소년끼리 서로 모여 집단 상담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8) 반항형, 의존형, 무관심형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성인에 대한 갖는 반항심이나 의존심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만난 대부분의 성인은 믿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친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모든 성인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인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항형의 청소년에게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외에서 또한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분노를 좀 더 건설적으로 풀 수 있게 다양한 분노 해소 목적으로 개발된 여가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청소년이 갖는 반항심이나 의존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일 것이다. 무관심형의 경우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 치료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병행해서 이들 청소년에게 자신들도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큰언니(Big Sister)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듯하다.

9) 단순가담형, 범죄형

청소년성매매에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용당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청소년성매매는 일단은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라 성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에게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으나 또 한편 청소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속으로 연결되어서는 된다고 본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심리, 정신 진단이 이루어져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청소년이 마약, 약물, 음주와 같은 비행과 연결되었을 경우 정확한 비행정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0) 희망형, 절망형

주요한 것은 청소년이 청소년성매매에 참여하였다고 그들의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에 반성을 할 기회를 갖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시설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제도적, 정책적, 시설적 뒷받침이다. 이들이 머무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시설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용돈도 지급하여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필요한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기술 교육을 시켜주고 또한 자립할 때까지 가정과 같은 그룹홈이 제공된다면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불신, 불만, 무관심도 결국에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성매매 청소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

끝으로 아래는 간략하게 성매매 청소년 유형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도표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기 준	성매매 청소년 유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보호시 고려 사항
가출여부	가출형	가출원인에대한 정확한 조사필요. 신상카드 작성. 단순귀가조치 바람직하지 않음.
	집거주형	부모와 청소년 함께 상담 프로그램 참여 필요.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필요.
참여동기	용돈벌이형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이 가능한 1,2호 보호처분, 1,3호 보호처분이 바람직함.
	생계형	쉼터나 선도보호시설 위탁, 자립·자활시설까지 연계 필요. 직업교육필요.
	호기심형	용돈벌이형과 같은 조치필요. 예방우선
재학여부	재학형	전문상담제공. 부모와 교사의 관심필요
	중도탈락형	계속교육기회제공. 학력인정제도 도입.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대안교육기회제공

기 준	성매매 청소년 유형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보호대책 /보호시 고려 사항
출신가정 형태	양부모가정출신형	부모교육필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필요
	다른형태의 가정출신형	멘터링 프로그램, 큰언니 프로그램
	저소득층 가정출신형	쉼터나 선도보호시설 위탁, 자립·자활시설로 연결. 가정복지 강화. 재정적지원
참여기간	단기간형	부모와 주위사람의 관심과 격려필요
	장기간형	전문치료서비스제공. 병원 및 요양소 위탁처분
활용매체	인터넷형, 핸드폰형	PC방출입시간제한, 핸드폰제한규제필요
	소개형	예방교육 철저히 시행
참여인원	나홀로형	성교육프로그램
	집단형	전문적 치료프로그램. 집단상담
성인에 대한 태도	반항형, 의지형, 무관심형	성인신뢰회복프로그램. 멘터링프로그램
범죄여부	단순가담형	상담프로그램
	범죄형	적절한 처벌필요. 교육·재활프로그램제공
미래에 대한 생각	희망형	원하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시설적 뒷받침필요.
	절망형	눈에 보이는 관심/격려 필요. 시설의 현대화. 용돈지급. 직업교육. 자립시설확충

V.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청소년성매매를 보는 시각 변화와 그런 시각 변화에 기여하였던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원조교제라는 용어 대신 왜 청소년성매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조차 청소년성매매 내에서 청소년과 성인과의 불평등한, 착취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새로운 용어-청소년성매수나 미성년자 강간-의 사용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다.

청소년성매매의 원인을 청소년에게서 찾지 않고 성인에게서 찾는, 혹은 사회적, 문화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했던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심영희의 일상의 권력이론, 호이가드와 핀스타드의 집단문화이론, 이 이론을 나름대로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려 했던 김은실이론과 이 이론을 한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적용하려 했던 신미식의 이론도 살펴보았다.

청소년성매매의 초점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옮겨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법이 현실의 가부장적인, 성인중심의 구조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 가도 알아보았다. 비록 원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노력들과 더불어 최소한 청소년성매매의 책임은 성인이 져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런 공감대는 결국 청소년성매매를 한국 땅에서 뿌리 뽑는데 필요한, 중요한 토양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깐 정작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보호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본 연구는 다시 초점을 성인

에서 청소년으로 옮겨놓으려고 했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와 특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원조교제 청소년의 현황과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성매매가 성매매 청소년에게 끼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아닌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선도·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는데서, 성매매 청소년을 유형화해보려고 시도했다. 유형화는 성매매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10개 골라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조치들-단순귀가조치, 보호처분, 선도보호시설, 쉼터-을 중심으로 그것들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선도·보호 조치는 실제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취해질 선도·보호 조치는 이런 현실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실현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전문화된, 개별화된 선도·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끝으로 위에 제시된 유형에 맞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각 유형에 적합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1. 강상순. 청소년 성매매: 17세 소녀의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 마니, 1999.
2. 고성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 7. 18.
3. 구로누마 가쓰시 (김은영 옮김). 원조교제. 선영사. 1999.
4. 김명학. 나, 일본 여고생. 이채. 1999.
5. 김성경.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6.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7. 김은실, 장필화 외.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1999.
8.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2001년 하계학술회의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8. 24.
9. 김지선, “청소년성매매 방지대책으로서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소년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문제 정책 포럼.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6. 21. (2001a)
10. 김지선, “성매수 대상청소년, 보호처분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 7. 18.
11. 김현울, “청소년의 형사처벌 논의로 본 ‘청소년보호’ 쟁점과 대안찾기”,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 7. 18.
12. 김희자. “10대 매매춘의 유입, 생활, 탈매춘의 가능성”,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한국 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 5.
13. 박금혜, “성매수 대상 청소년 사회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청소년보호위원회. 2001년 7월 26일.

14. 박병식, “10대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 방안」 IMF 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제 7차 토론회. 2000. 3. 23.
15. 박용철,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방안-선도보호시설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16. 방기연, “성매매 청소년 사회복귀에 연관된 변인들”,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17. 변화순,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방안”,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 방안」 IMF 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제 7차 토론회. 2000. 3. 23.
18. 송연순,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현황-”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19. 신미식. “10대 여자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연구”, 주성대학 논문집 제 9집. 2000a.
20. 신미식.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정책 전문연구 10.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b.
21. 심영희.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하계학술회의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 8월 24일.
22. 우장훈, “청소년보호시설의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현황-소년원 특성화 학교를 중심으로-”,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23. 원미혜. 한국의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24. 유희일 · 이충일 · 서경무, 사회복지법제론. 두남. 2000.
25. 이경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둘러싼 논의의 검토”,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 7. 18. (2001a)
26.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2001년 하계학술회의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8. 24. (2001b)
27. 이미경, “성매수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지 요구-사례를 중심으로-”,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28. 이미양,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시설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29. 이민희, “청소년보호 정책의 현실과 이상”, 청소년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년 7월 18일.
30. 이정미,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지 방안-선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31. 이용교,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2: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 5.
32. 이효희.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33. 전경숙, “시설 ·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7. 26.
34. 조아마 · 이명화. “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과거 · 현재 · 미래”, 청소년성매매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서울

YMCA. 2001. 7. 18.

35. 조성연,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 5.
36. 조현순, “선도보호시설 및 쉼터의 현황 및 개선, 제안점”,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 방안」 IMF 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제 7차 토론회. 2000. 3. 23.
37. 정책기획, 청소년성매매 방지대책. 2000. 4.12.
38.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집, 2000.
39. 최영애, “청소년 성매매와 대처방안”,
4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1996.
41. 한국성폭력상담소,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 자료집, 1999.
42. 한국청소년개발원, 유해업소 고용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법, 복지, 교육대책. 1999.
43. 한소리회, 매춘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바로보기 자료집(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 1999.
44. 황순길·이은경·권해수·박관성,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문제 정책 포럼.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6. 21.
45. 주요 일간지에 실린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에 관한 기사
46. 인터넷에서 뽑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관련 자료
47. 주부생활 등 여성 잡지에 실린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관련 기사
48. Kim, Soung-Yee, “Protecting Youth from Sexual Crimes”, WAY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New Youth Promotion into the 21 Century. Nov. 1-5. WAYS (The World Association for Youth Sciences)